
제2024-5회

**중앙운영위원회
별첨자료**

2024. 2. 19.

보고안건 별첨자료

보고안건 제9호

**학생복지위원회
자치규칙 전부개정
보고**

KAIST 학생복지위원회 회칙

2024.02.0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학생복지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회의 소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이하 '본원') 내로 한다.

제3조(지위)

본회는 학내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총학생회장단 산하 상설위원회이다.

제4조(목적)

본회는 학내 복지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합리적인 소비 풍토를 조성하여 쾌적한 교육 여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성)

- 본회는 위원과 지도교수로 구성된다.
- 본회는 업무를 위하여 위원장단을 포함한 임원진을 둔다.
- 본회는 사무국, 복지국, 문화국을 둔다.
- 위원장의 권한으로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업무 및 권한)

본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① 본회에 관련된 모든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② 교내 코인노래방 운영권을 가진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 ④ 전체 학생회 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 ⑤ 위 사업의 실현을 위한 연대사업을 전개한다.

제2장 구성원

제1절 위원

제8조(구성과 자격)

본회의 위원은 수습위원, 정위원, 명예위원으로 구분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모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①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 ② 위원 회의에 참석할 의무
- ③ 임원회의의 허가를 받는 적절한 사유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계절학기에 남아 본회 사업을 수행할 의무
- ④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활동 및 사업에 참가하며 본회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제10조(권리)

본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①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와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본회의 회의에 발언권, 의결권을 가진다.

③ 학생복지 시설의 조사에 필요한 학내 자료 및 시설물에 대해 학교 관계 당국의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학우들의 제반 복지 문제에 관한 대변권을 가진다.

제11조(선발)

본회의 위원의 선발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 위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중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와 임원회의의 심의 후 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본회 신규 선발 위원은 수습위원이 된다.

제12조(징계 및 제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징계 및 제명을 할 수 있다.

①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 위원 회의, 임원 회의에 사전 승인 없이 연속 2회 불참 시 임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② 징계에 불응하는 경우 위원장의 권한으로 제명할 수 있다.

③ 본회를 악용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을 경우, 심의 대상인 자를 제외한 위원회의를 거쳐 전체의 2/3이상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④ 학우들의 제반 복지 문제에 관한 대변권을 가진다.

제13조(위원의 자격 박탈)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위원의 소명 기회를 포함하여 진행한다.

제14조(벌금 징수)

① 벌금은 회의, 행사에 지각하거나 불참한 위원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 징수를 면제한다.

② 회의 지각은 개회 시각보다 늦게 참가하는 것으로 정한다.

③ 행사 지각은 집합 시각보다 늦게 집합하는 것으로 정한다.

④ 모든 벌금의 금액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의장과 함께

의결을 승인할 권리를 갖는다.

- ⑤ 위원장은 기타 사유로 인한 벌금 징수에 관한 건을 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

다. 제15조(포상)

위원장은 본원과 위원회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위원을 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수습위원)

- ① 본회 위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중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와 임원회의의 심의 후 위원장이 선임한다.
- ② 수습 기간은 선발 직후부터 정위원 임명 시점까지로 한다.
- ③ 수습 기간은 이 회칙에서의 복지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수습위원은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정위원)

- ① 위원장은 정위원의 평가를 거쳐 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수습위원만을 정위원에 임명한다.
- ② 정위원의 임명 시점은 겨울 대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정위원의 임기는 임명 시점부터 이듬해 가을학기까지로 한다.

제18조(명예위원)

- ① 위원장은 임기 동안의 본회 활동을 성실히 마친 정위원만을 명예위원에 임명한다.

제2절 임원

제19조(임원의 구성)

- ① 본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복지국장, 문화국장을 임원으로 둔다.
- ②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장단이라 한다.

제20조(위원장)

본회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

- ① 위원장은 호선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친다.
- ②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회의, 행사 및 기타 사항을 총괄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은 업무 필요상 학교 관계 책임자 및 업자와의 회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복지 자영 사업체의 물품 구매 입찰 및 계약에 학생 대표로 참가할 수 있다.
- 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업무 보고의 의무가 있다.
- ⑥ 기타 위원장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부위원장)

본회의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

- ① 부위원장은 호선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하며 그 책임을 진다.
- ③ 기타 부위원장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국장)

- ① 국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주최하는 임원회의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 ② 국장은 담당 국에 대한 사항을 총괄 주재한다.
- ③ 국장은 국별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

제23조(임원 후보의 자격)

-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국별 국장의 자격은 제3차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임명 1년 이내의 정위원으로 한다.
- ② 모든 임원의 자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이 조에서 언급된 순서대로 선출한다.
- ② 각 국별 국장은 가을학기 마지막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 ③ 위원장단은 가을학기 마지막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제25조(임원 선출 선거)

- ① 임원은 위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임원 선출 선거에서의 후보는 각 임원 후보의 자격을 만족하는 정위원 중 자원하는 사람이다.
- ③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과반일 때는 그 최고 득표자를 차기 임원으로 선출한다.
- ④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과반이 아닐 때는 그 투표의 최저 득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득표자를 후보로 하여 다시 투표한다. 다만, 최저 득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득표자가 1명일 경우에는 그 후보를 선출한다.
- ⑤ 투표 결과 전원 동률일 때는 후보의 변경 없이 다시 투표하거나 의장이 모든 후보 각각에 대한 찬반 투표에 관한 건을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이 의결되면 찬성 득표가 가장 높은 후보를 선출한다.
- ⑥ 찬반 투표 결과가 다음 각 호일 때는 다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1. 득표자가 2명이며 최고 득표가 투표자의 과반이 아닐 때
 2. 최고 찬성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 ⑦ 당선된 임원은 내부호선되어 전학대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26조(임원의 임명)

모든 임원은 제3차 정기총회 (가을학기 마지막 회의)에서 임명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임명 시점부터 차기 위원장의 내부호선 시점까지이다.

제28조(임원직의 중임과 겸임)

모든 임원직은 중임할 수 없다.

제29조(임원의 탄핵)

- ① 위원장은 다른 임원의 탄핵에 관한 건을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 ② 5명 이상의 정위원은 연서를 통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탄핵에 관한 건을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 ③ 가결된 탄핵안은 탄핵안이 상정된 총회의 폐회 직후부터 발효된다.

제30조(임원의 꺼위 시 조치)

- ① 위원장의 꺼위 시 부위원장이 그 직위를 위임한다.
- ② 부위원장, 국장이 꺼위 시 2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호선한다. 이 경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모든 회의의 의장은 제19조에 나열된 순서에 따라 정한다.
- ③ 임원의 꺼위 시 임명되는 후임자의 활동은 중임 대상이 아니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

제1절 총회

제31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로 구분된다.

제32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정위원과 수습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33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의 탄핵에 관한 건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34조(총회의 소집)

- ① 정기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맞추어 의장이 소집한다.
 1. 제1차 정기 총회(겨울 대회의)는 2월 첫째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2차 정기 총회(여름 대회의)는 8월 첫째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3차 정기 총회는 가을학기 마지막 위원회의가 있는 주 금요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 총회는 구성원의 일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②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부위원장의 소집요구

3. 5명 이상 정위원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제35조(총회 참가 의무)

모든 정위원과 수습 위원은 총회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제36조(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무)

총회 재석 인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

제37조(총회 안건의 통과 요건)

총회 안건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의 탄핵에 관한 건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회칙 개정 안건의 통과 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회칙 개정 안건의 통과 요건)

① 개별 조항 개정 안건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발의와 출석위원 1/2 이상의 동의로써 개정할 수 있다.

② 전면 개정 안건의 통과 요건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9조(부재자의 의결)

① 의결권을 가진 부재자는 군 또는 질병 휴학한 정위원 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정위원에 한한다.

② 의결권을 가진 부재자는 의사를 의장에게 표명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절 위원회의

제40조(위원회의의 구분)

위원회의는 정기 위원회의, 임시 위원회의, 정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41조(위원회의의 의장)

위원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한다.

제42조(위원회의의 소집)

① 정기 위원회의는 정규학기 중 교양 시험 전 주와 교양 및 전공 시험 주간을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 21시 10분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위원회의와 정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부위원장의 소집요구

3. 5명 이상 정위원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제43조(위원회의의 참가 의무)

모든 수습위원과 정위원은 위원회의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정위원회의의 경우 6개월 이상 활동한 정위원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44조(위원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무)

위원회의 재석 인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위원회의의 안건의 통과 요건)

위원회의의 안건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46조(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의 책임)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서기를 지정해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을 진다.

제47조(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효력)

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은 변경되거나 파기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제3절 임원회의

제48조(임원회의)

임원 회의는 본회의 최고 심의 기구이다.

제49조(임원회의의 구성)

위원장단 및 국장단으로 구성된다.

제50조(임원회의의 성립)

임원회의는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51조(임원회의의 의장)

임원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한다.

제52조(임원회의의 소집)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① 위원장의 소집요구
- ② 부위원장의 소집요구
- ③ 3명 이상의 임원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제53조(임원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무)

임원회의의 재석 인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

제54조(임원회의의 안건)

임원회의의 안건은 본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한다.

제55조(임원회의의 안건의 통과 요건)

임원회의의 안건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4절 국별회의

제56조(국별회의)

국별회의는 본회의 실무사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회의이며 각 국의 제반 업무를 심의 집행한다.

제57조(국별회의의 구성)

각 국장이 소집, 주관하며 해당위원들로 구성한다.

제58조(국별회의의 의장)

국별회의의 의장은 국장으로 한다.

제59조(국별회의에서 국장의 책임)

각 국장은 국별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점을 위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4장 활동

제60조(위원의 선발)

- ① 본회는 정위원이 실시하는 선발 과정(이하 '리크루팅')을 거쳐 수습위원을 선발한다.
- ② 리크루팅은 1차 서류 평가와 2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 ③ 추가 리크루팅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위원회의를 거쳐 추가 리크루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위원)

모든 위원은 사무국, 복지국, 문화국 중 한 국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활동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제62조(상근)

- ① 회의를 진행하는 정규학기 주간 동안 평일 19-21시에 학생복지위원회 단실에서 진행된다.
- ② 위원장이 승인하는 사유가 있을 시 상근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상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과 단실 관리를 기본 업무로 3명 이상의 위원을 배정한다.
- ④ 단기 사업을 상근 시간에 진행할 때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충분한 인원을 배정해 업무가 원활하도록 한다.
- ⑤ 상근 시간에는 단실의 문을 개방하고, 단실 내부의 모든 위원은 방문자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63조(정기 사업)

- ① 정기 사업은 온라인 캘린더, 딸기파티, 정기 북마켓, 추석 귀향버스 진행, 학기말 택배 사업, 야구잡바 및 롱패딩 공동구매를 일컫는다.
- ② 매년 정기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상시 사업)

상시사업은 대여사업, 코인노래방을 일컫는다.

제65조(행사 지원)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66조(재정의 구성)

- ① 본회의 재정은 운영비와 자치활동비로 구분한다.
- ② 운영비는 교내 코인노래방의 수입 및 기타 재정적 지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벌금의 이용)

제2장 제14조에 따라 징수한 벌금은 자치활동비로 이용된다.

제6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해당 년도의 봄학기 개강일부터 익년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69조(행사 수입 차액의 처리)

활동 후 행사 수입의 차액은 운영비로 전환한다.

제70조(관리)

본회의 재정관리는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임원회의의 승인으로 집행한다.

제6장 비상대책위원회

제71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가 된다.

- ① 위원장단의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 ② 위원장단 모두가 사퇴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72조(구성)

- ① 제72조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지체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와 그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본회 위원이 모두 포함되어 구성된다.
- ③ 단, 기존 본회 위원이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된다.

1. 본회의 해산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2.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기존 본회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을 지원자 중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73조(위원장단)

- ①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의 위원장단이나 국장단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본회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혹은 재임 했던 사람으로 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본회의 위원장단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74조(업무 및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에 준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위원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위원장단의 구성기간 동안 본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제7장 기타

제75조(시행세칙)

본 개정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칙

제76조(회칙의 효력)

이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77조(회칙 개정의 기록)

회칙 개정에 대한 기록에 대한 책무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진다.

제78조(회칙개정)

- ① 본 회칙은 2006년 4월 3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1차 개정회칙이다
- ② 본 회칙은 2013년 8월 3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2차 개정회칙이다.
- ③ 본 회칙은 2015년 8월 22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3차 개정회칙이다.
- ④ 본 회칙은 2017년 8월 9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4차 개정회칙이다.
- ⑤ 본 회칙은 2019년 8월 9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5차 개정회칙이다.
- ⑥ 본 회칙은 2024년 2월 2일 제1차 정기 총회에서 개정된 제6차 개정회칙이다.

학생복지위원회칙 전부개정회칙안 연서 명단

1. 연서 명단

연번	이름	직위
1	김준태	부위원장
2	문홍윤	문화국장
3	고지민	복지국장
4	김정빈	사무국장
5	김우혁	복지국원
6	박주혁	사무국원

KAIST 학부 총학생회

현 행	개 정 안
<p>제 1 장 총칙</p> <p>제1조(명칭)</p> <p>본회는 KAIST 학생복지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p>	<p>제1장 총칙</p> <p>제1조(명칭)</p> <p>본회는 KAIST 학생복지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p>
<p>제2조(소재)</p> <p>본회의 소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이하 '본원') 내로 한다.</p>	<p>제2조(소재)</p> <p>본회의 소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이하 '본원') 내로 한다.</p>
<p>제3조(지위)</p> <p>본회는 학내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총학생회장단 산하 상설위원회이다.</p>	<p>제3조(지위)</p> <p>본회는 학내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총학생회장단 산하 상설위원회이다.</p>
<p>제4조 (목적):</p> <p>본회는 민주주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학내 복지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합리적 소비 풍토를 조성하여 쾌적한 교육여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목적)</p> <p>본회는 학내 복지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합리적인 소비 풍토를 조성하여 쾌적한 교육 여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결기구 : 위원회의, 임원회의, 국별회의 2. 집행기구 : 위원장단, 집행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집행부는 사무국, 복지국, 문화국으로 구성한다. 	<p>제5조(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회는 국원과 지도교수로 구성된다. ② 본회는 업무를 위하여 위원장단을 포함한 임원진을 둔다. ③ 본회는 사무국, 복지국, 문화국을 둔다. ④ 본회는 홈페이지팀, 디자인팀, 홍보팀, 복지팀을 둔다.

<p>2. 사무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본회의 회계업무 및 재무를 담당한다.</p> <p>3. 복지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복지문제를 담당한다.</p> <p>4. 문화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교내 문화사업 및 캠페인에 관한 문제를 담당한다.</p> <p>1. 기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특별기구</p>	<p>⑤ 위원장의 권한으로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6조(회원)</p> <p>본회의 회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p>	<p>제6조(회원)</p> <p>본회의 회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p>
<p>제7조(업무 및 권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는 본회에 관련된 모든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 교내 당구장 운영권을 가진다. 3. 중앙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4. 전체 학생회 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5. 위 사업의 실현을 위한 연대사업을 전개한다. 	<p>제7조(업무 및 권한)</p> <p>본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회에 관련된 모든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교내 코인노래방 운영권을 가진다. ③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④ 전체 학생회 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⑤ 위 사업의 실현을 위한 연대사업을 전개한다.
<p>제8조(구성과 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위원은 KAIST 학사 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투철한 봉 	<p>제2장 구성원</p> <p>제1절 위원</p>

<p>사정신을 가진 선량한 품성의 소유자이어야 한다.</p> <p>2. 본회의 위원은 정위원과 수습위원으로 구성된다.</p> <p>1. 정위원은 본회 위원 중 수습위원 임기 1개월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p>	<p>제8조(구성과 자격)</p> <p>본회의 위원은 수습위원, 정위원, 명예위원으로 구분한다.</p>
<p>제9조(임기) : 본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p> <p>1. 본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p> <p>1. 위원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p> <p>2. 위원장단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p> <p>0. 단 재선임 의사가 있는 기존 위원의 요구 시 위원장이 재선임할 수 있다.</p> <p>0.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적절한 사유로 본회를 탈퇴하게 될 경우에는 임기간의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p> <p>0. 임기간에 대하여 매 6개월마다 리더십 마일리지를 정위원과 수습위원에게 지급한다.</p> <p>0. 본회의 위원은 수습위원으로 최초 선발 후 36개월 이내에 재선임 될 수 있다.</p>	<p>제9조(위원의 의무)</p> <p>모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p> <p>①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p> <p>② 위원 회의에 참석할 의무</p> <p>③ 임원회의의 허가를 받는 적절한 사유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계절학기에 남아 본회 사업을 수행할 의무</p> <p>④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활동 및 사업에 참가하며 본회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p>
<p>제10조(권리) : 본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p> <p>1. 발언권, 의결권을 가진다.</p> <p>2.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와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p> <p>3. 학생복지 시설의 조사에 필요한 학내 자료 및 시설물</p>	<p>제10조(권리)</p> <p>본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p> <p>①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와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본회의 회의에 발언권, 의결권을 가진다.</p>

<p>에 대해 학교 관계 당국의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p> <p>4. 학우들의 제반 복지 문제에 관한 대변권을 가진다.</p>	<p>③ 학생복지 시설의 조사에 필요한 학내 자료 및 시설물에 대해 학교 관계 당국의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p> <p>④ 학우들의 제반 복지 문제에 관한 대변권을 가진다.</p>
<p>제11조(의무) : 본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활동 및 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2. 본회 위원은 위원회의에 참석 할 의무가 있다. 3. 본회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4. 본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임원회의의 허가를 받는 적절한 사유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본회 위원은 계절학기에 남아 본회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p>제11조(선발)</p> <p>본회의 위원의 선발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회 위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중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와 임원회의의 심의 후 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본회 신규 선발 위원은 수습위원이 된다.
<p>제12조(선발) : 본회 위원의 선발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 위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중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와 임원회의의 심의 후 위원장이 선임한다. 2. 본회 신규 선발 위원은 수 	<p>제12조(징계 및 제명)</p> <p>본회는 다음과 같은 징계 및 제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 위원 회의, 임원 회의에 사전 승인 없이 연속 2회 불참 시 임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② 징계에 불응하는 경우 위원장의 권한으로 제명할 수 있다.

<p>습위원이 된다.</p>	<p>③ 본회를 악용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을 경우, 심의 대상인 자를 제외한 위원회의를 거쳐 전체의 2/3이상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p> <p>④ 학우들의 제반 복지 문제에 관한 대변권을 가진다.</p>
<p>제13조(징계 및 제명)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징계 및 제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 위원회의, 임원회의에 이유 없이 연속 3회 불참 시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 후 이에 불응할 경우 위원장의 권한으로 제명할 수 있다. 2 본회를 악용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을 경우, 심의 대상인 자를 제외한 위원회의를 거쳐 전체의 2/3이상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 3 본회의 의결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도 전항에 준한다. 	<p>제13조(위원의 자격 박탈)</p> <p>위원장은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위원의 소명 기회를 포함하여 진행한다.</p>
<p>제14조(이의 제기) : 본회의 위원은 본회의 목적에</p>	<p>제14조(벌금 징수)</p> <p>① 벌금은 회의, 행사에 지각하거나 불</p>

<p>부합되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야기되는 권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위원회의를 거쳐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p>	<p>참한 위원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 징수를 면제한다.</p> <p>② 회의 지각은 개회 시각보다 늦게 참가하는 것으로 정한다.</p> <p>③ 행사 지각은 집합 시각보다 늦게 집합하는 것으로 정한다.</p> <p>④ 모든 벌금의 금액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의장과 함께 의결을 승인할 권리를 갖는다.</p> <p>⑤ 위원장은 기타 사유로 인한 벌금 징수에 관한 건을 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p>
<p>제 3 장 임 원</p> <p>제15조(구성) : 임원은 위원장단을 포함한 각 집행기구의 국장들로 구성된다</p>	<p>제15조(포상)</p> <p>위원장은 본원과 위원회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위원을 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p>
<p>제16조(위원장) : 본회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p> <p>1 위원장은 호선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친다.</p> <p>2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p>	<p>제16조(수습위원)</p> <p>① 본회 위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중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와 임원회의의 심의 후 위원장이 선임한다.</p>

<p>본회의 모든 회의, 행사 및 기타 사항을 총괄 주재한다.</p> <p>3 위원장은 업무 필요상 학교 관계 책임자 및 업자와의 회담을 요청할 수 있다.</p> <p>4 위원장은 복지 자영 사업체의 물품 구매 입찰 및 계약에 학생 대표로 참가할 수 있다.</p> <p>5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업무 보고의 의무가 있다.</p> <p>6 기타 위원장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p>	<p>② 수습 기간은 선발 직후부터 정위원 임명 시점까지로 한다.</p> <p>③ 수습 기간은 이 회칙에서의 복지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④ 수습위원은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진다.</p>
<p>제17조(부위원장) : 본회의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p> <p>1 부위원장은 호선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친다.</p> <p>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p>	<p>제17조(정위원)</p> <p>① 위원장은 정위원의 평가를 거쳐 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수습위원만을 정위원에 임명한다.</p> <p>② 정위원의 임명 시점은 겨울 대회를 원칙으로 한다.</p> <p>③ 정위원의 임기는 임명 시점부터 이듬해 가을학기까지로 한다.</p>

<p>행하며 그 책임을 진다.</p> <p>3 기타 부위원장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p>	
<p>제18조(국장) : 본회의 국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p> <p>1 국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출한다.</p> <p>2 국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주최하는 임원회의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p> <p>3 국장은 담당 국에 대한 사항을 총괄 주재한다.</p> <p>4 국장은 국별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p>	<p>제18조(명예위원)</p> <p>① 위원장은 임기 동안의 본회 활동을 성실히 마친 정위원만을 명예위원에 임명한다.</p>
<p>제 4 장 회 의</p> <p>제19조(위원회의)</p> <p>1 위원회의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p> <p>2 본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p> <p>3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부득이한 사항이 없을 시 매주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필</p>	<p><u>제 2절 임원</u></p> <p>제19조(임원의 구성)</p> <p>① 본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복지국장, 문화국장을 임원으로 둔다.</p> <p>②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장단이라 한다.</p>

<p>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p> <p>4 결의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p> <p>5 본회의 사업계획, 사업진행 등의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p> <p>6 본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불참 시 사유를 회의 이전까지 위원장에게 사전 공지하여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20조(임원회의)</p> <p>1 임원회의는 본회의 최고 심의기구이다.</p> <p>2 정, 부위원장 및 각국의 국장으로 구성된다.</p> <p>3 각 국장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p> <p>4 본회의 업무특성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위원회의에 상정한다.</p>	<p>제20조(위원장)</p> <p>본회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p> <p>① 위원장은 호선 후 전 체학생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친다.</p> <p>②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회의, 행사 및 기타 사항을 총괄 주재한다.</p>

	<p>③ 위원장은 업무 필요상 학교 관계 책임자 및 업자와의 회담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위원장은 복지 자영 사업체의 물품 구매 입찰 및 계약에 학생 대표로 참가할 수 있다.</p> <p>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업무 보고의 의무가 있다.</p> <p>⑥ 기타 위원장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p>
<p>제21조(국별회의)</p> <p>1 국별회의는 본회의 실무사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회의이다.</p> <p>2 각 국장이 소집, 주관하며 부원들로 구성한다.</p> <p>3 각 국의 제반업무를 심의 집행한다.</p> <p>4 각 국장은 국별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점을 위원회의에 상정 할 수 있다.</p>	<p>제21조(부위원장)</p> <p>본회의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p> <p>① 부위원장은 호선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하며 그 책임을 진다.</p> <p>③ 기타 부위원장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p>
<p>제 5 장 재 정</p> <p>제22조(경비) : 본회의 재정은 교내 학부 당구</p>	<p>제22조(국장)</p> <p>① 국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주최하는 임원회</p>

<p>장 및 기타 복지기금으로 충당한다.</p>	<p>의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p> <p>② 국장은 담당 국에 대한 사항을 총괄 주재한다.</p> <p>③ 국장은 국별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p>
<p>제23조(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년도는 해당 연도의 봄 학기 개강일 부터 익년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로 한다.</p>	<p>제23조(임원 후보의 자격)</p> <p>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국별 국장의 자격은 제3차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임명 1년 이내의 정위원으로 한다.</p> <p>② 모든 임원의 자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p>
<p>제24조(관리) : 본회의 재정관리는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위원회의 승인으로 집행한다.</p>	<p>제24조(임원의 선출)</p> <p>① 임원은 이 조에서 언급된 순서대로 선출한다.</p> <p>② 각 국별 국장은 가을학기 마지막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p> <p>③ 위원장단은 가을학기 마지막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p>
<p>제 6 장 호 선</p> <p>제25조(호선) : 본회의 위원장단은 본회 내부호선 후 전학대회 인준으로 임명된다.</p>	<p>제25조(임원 선출 선거)</p> <p>① 임원은 위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p> <p>② 임원 선출 선거에서의 후보는 각 임원 후보의 자격을 만족하는 정위원 중 자원하</p>

	<p>는 사람이다.</p> <p>③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과반일 때는 그 최고 득표자를 차기 임원으로 선출한다.</p> <p>④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과반이 아닐 때는 그 투표의 최저 득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득표자를 후보로 하여 다시 투표한다. 다만, 최저 득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득표자 가 1명일 경우에는 그 후보를 선출한다.</p> <p>⑤ 투표 결과 전원 동률일 때는 후보의 변경 없이 다시 투표하거나 의장이 모든 후보 각각에 대 한 찬반 투표에 관한 건을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이 의결되면 찬성 득표가 가장 높은 후보를 선출한다.</p> <p>⑥ 찬반 투표 결과가 다음 각 호일 때는 다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득표자가 2명이며 최고 득표가 투표자의 과반이 아닐 때 2. 최고 찬성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p>⑦ 당선된 임원은 내부호선되어 전학대회의 인준을 거친다.</p>
<p>제26조(선관위) : 본회의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일</p>	<p>제26조(임원의 임명)</p> <p>모든 임원은 제3차 정기총회 (가을학기 마지막 회의)에서 임명된다.</p>

<p>14일 전에 현재 임기 중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제27조(선거권) : 본회의 선거권자는 본회의 위원으로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p>	<p>제27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임명 시점부터 차기 위원장의 내부호선 시점까지이다.</p>
<p>제28조(피선거권) : 다음의 자격을 갖춘 본회의 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교에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다음 임기 동안 재학예정인 자. 2 본회의 위원 자격으로 2학기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p>제28조(임원직의 중임과 겸임) 모든 임원직은 중임할 수 없다.</p>
<p>제29조(선거방법) : 본회의 선거는 본회의 위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p>	<p>제29조(임원의 탄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장은 다른 임원의 탄핵에 관한 건을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② 5명 이상의 정위원은 연서를 통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탄핵에 관한 건을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③ 가결된 탄핵안은 탄핵안이 상정된 총회의 폐회 직후부터 발효된다.
<p>제30조(등록) : 본회의 선거는 위원회의에서</p>	<p>제30조(임원의 궐위 시 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장의 궐위 시 부위원장이 그 직위를

<p>선관위에 등록할 수 있다.</p>	<p>위임한다.</p> <p>② 부위원장, 국장이 궐위 시 2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호선한다. 이 경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모든 회의의 의장은 제19조에 나열된 순서에 따라 정한다.</p> <p>③ 임원의 궐위 시 임명되는 후임자의 활동은 중임 대상이 아니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31조(당선) : 피선거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투표와 1/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p>	<p>제3장 회의</p> <p><u>제1절 총회</u></p> <p>제31조(총회의 구분)</p> <p>총회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로 구분된다.</p>
<p>제32조(승인) : 당선된 피선거권자는 전학대회의 인준을 거친다.</p>	<p>제32조(총회의 성립)</p> <p>총회는 정위원과 수습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p>
<p>제 7 장 비 상 대 책 위 원 회</p> <p>제33조(지위)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단의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2 위원장단 모두가 사퇴하 	<p>제33조(총회의 의장)</p> <p>총회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의 탄핵에 관한 건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한다.</p>

<p>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p>	
<p>제34조(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지체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와 그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본회 위원이 모두 포함되어 구성된다. 3 단, 기존 본회 위원이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해산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2.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기존 본회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을 지원자 중 선 	<p>제34조(총회의 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기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맞추어 의장이 소집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차 정기 총회(겨울 대회의)는 2월 첫째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2차 정기 총회(여름 대회의)는 8월 첫째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3차 정기 총회는 가을학기 마지막 위원회의가 있는 주 금요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 총회는 구성원의 일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②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부위원장의 소집요구 3. 5명 이상 정위원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p>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p>	
<p>제35조(위원장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의 대표자, 혹은 국장단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본회 위원으로 재임중이거나 혹은 재임했던 사람으로 한다. 3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본회의 위원장단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p>제35조(총회 참가 의무)</p> <p>모든 정위원과 수습 위원은 총회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p>
<p>제36조(업무 및 권한)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에 준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 	<p>제36조(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무)</p> <p>총회 재석 인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p>

<p>의 위원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p> <p>3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위원장단의 구성기간 동안 본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p>	
<p>제 8 장 부 칙</p> <p>제37조(회칙개정) : 본회의 회칙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발의와 출석위원 1/2 이상의 동의로써 개정할 수 있다.</p>	<p>제37조(총회 안건의 통과 요건)</p> <p>총회 안건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의 탄핵에 관한 건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회칙 개정 안건의 통과 요건은 별도로 정한다.</p>
<p>제38조(발효) : 본 개정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p>	<p>제38조(회칙 개정 안건의 통과 요건)</p> <p>① 개별 조항 개정 안건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발의와 출석위원 1/2 이상의 동의로써 개정할 수 있다.</p> <p>② 전면 개정 안건의 통과 요건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p>
<p>제39조(시행세칙) : 본 개정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관례에 따른다.</p>	<p>제39조(부재자의 의결)</p> <p>① 의결권을 가진 부재자는 군 또는 질병 휴학한 정위원 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정위원에 한한다.</p>

	<p>② 의결권을 가진 부재자는 의사를 의장에게 표명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p>
<p>제40조(회칙개정) : 본회의 회칙 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회칙은 2006년 4월 3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1차 개정회칙이다. 2 본 회칙은 2013년 8월 3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2차 개정회칙이다. 3 본 회칙은 2015년 8월 22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3차 개정회칙이다. 4 본 회칙은 2017년 8월 9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4차 개정회칙이다. 5 본 회칙은 2019년 8월 9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5차 개정회칙이다. 	<p><u>제2절 위원회의</u> 제40조(위원회의의 구분)</p> <p>위원회의는 정기 위원회의, 임시 위원회의, 정위원회의로 구분한다.</p>
<p>< 신 설 ></p>	<p>제41조(위원회의의 의장)</p> <p>위원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한다.</p>
<p>< 신 설 ></p>	<p>제42조(위원회의의 소집)</p> <p>① 정기 위원회의는 정규학기 중 교양 시험 전 주와 교양 및 전공 시험 주간을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 21시 10분에 의장이 소집한다.</p>

	<p>② 임시 위원회의와 정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부위원장의 소집요구 3. 5명 이상 정위원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신 설 >	<p>제43조(위원회의 참가 의무)</p> <p>모든 수습위원과 정위원은 위원회의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정위원회의의 경우 6개월 이상 활동한 정위원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p>
< 신 설 >	<p>제44조(위원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무)</p> <p>위원회의 재석 인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p>
< 신 설 >	<p>제45조(위원회의 안건의 통과 요건)</p> <p>위원회의 안건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p>
< 신 설 >	<p>제46조(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의 책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서기를 지정해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을 진다.
< 신 설 >	<p>제47조(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효력)</p> <p>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은 변경되지</p>

	나 파기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 신 설 >	<p><u>제3절 임원회의</u></p> <p>제48조(임원회의)</p> <p>임원 회의는 본회의 최고 심의 기구이다.</p>
< 신 설 >	<p>제49조(임원회의의 구성)</p> <p>위원장단 및 국장단으로 구성된다.</p>
< 신 설 >	<p>제50조(임원회의의 성립)</p> <p>임원회의는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p>
< 신 설 >	<p>제51조(임원회의의 의장)</p> <p>임원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한다.</p>
< 신 설 >	<p>제52조(임원회의의 소집)</p> <p>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p> <p>① 위원장의 소집요구</p> <p>② 부위원장의 소집요구</p> <p>③ 3명 이상의 임원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p>
< 신 설 >	<p>제53조(임원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무)</p> <p>임원회의의 재석 인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p>
< 신 설 >	<p>제54조(임원회의의 안건)</p> <p>임원회의의 안건은 본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한다.</p>
< 신 설 >	제55조(임원회의의 안건의 통과 요건)

	<p>임원회의의 안건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p>
< 신 설 >	<p><u>제4절 국별회의</u> 제56조(국별회의)</p> <p>국별회의는 본회의 실무사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회의이며 각 국의 제반 업무를 심의 집행한다.</p>
< 신 설 >	<p>제57조(국별회의의 구성)</p> <p>각 국장이 소집, 주관하며 해당위원들로 구성한다.</p>
< 신 설 >	<p>제58조(국별회의의 의장)</p> <p>국별회의의 의장은 국장으로 한다.</p>
< 신 설 >	<p>제59조(국별회의에서 국장의 책임)</p> <p>각 국장은 국별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점을 위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p>
< 신 설 >	<p>제4장 활동</p> <p>제60조(위원의 선발)</p> <p>① 본회는 정위원이 실시하는 선발 과정(이하 '리크루팅')을 거쳐 수습위원을 선발한다.</p> <p>② 리크루팅은 1차 서류 평가와 2차 면접으로 진행된다.</p> <p>③ 추가 리크루팅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위원회의를 거쳐 추가 리크루팅을 실시할 수 있다.</p>
< 신 설 >	<p>제61조(위원)</p>

	<p>모든 위원은 사무국, 복지국, 문화국 중 한 국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활동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외로 한다.</p>
<p>< 신 설 ></p>	<p>제62조(상근)</p> <p>① 회의를 진행하는 정규학기 주간 동안 평 일 19-21시에 학생복지위원회 단실에서 진 행된다.</p> <p>② 위원장이 승인하는 사유가 있을 시 상근 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p> <p>③ 상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과 단실 관리를 기본 업무로 3명 이상의 위원을 배 정한다.</p> <p>④ 단기 사업을 상근 시간에 진행할 때에 는 사업 규모에 따라 충분한 인원을 배정 해 업무가 원활하도록 한다.</p> <p>⑤ 상근 시간에는 단실의 문을 개방하고, 단실 내부의 모든 위원은 방문자를 맞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p>
<p>< 신 설 ></p>	<p>제63조(정기 사업)</p> <p>① 정기 사업은 온라인 캘린더, 딸기파티, 정 기 북마켓, 추석 귀향버스 진행, 학기말 택배 사업, 야구잠바 및 롱패딩 공동구매를 일컫 는다.</p> <p>② 매년 정기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p>

<p>< 신 설 ></p>	<p>제64조(상시 사업)</p> <p>상시사업은 대여사업, 코인노래방을 일컫는다.</p>
<p>< 신 설 ></p>	<p>제65조(행사 지원)</p> <p>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p>
<p>< 신 설 ></p>	<p>제5장 재정</p> <p>제66조(재정의 구성)</p> <p>① 본회의 재정은 운영비와 자치활동비로 구분한다.</p> <p>② 운영비는 교내 코인노래방의 수입 및 기타 재정적 지원으로 구성한다.</p>
<p>< 신 설 ></p>	<p>제67조(벌금의 이용)</p> <p>제2장 제14조에 따라 징수한 벌금은 자치활동비로 이용된다.</p>
<p>< 신 설 ></p>	<p>제68조(회계년도)</p> <p>본회의 회계년도는 해당 년도의 봄학기 개강일부터 익년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로 한다.</p>
<p>< 신 설 ></p>	<p>제69조(행사 수입 차액의 처리)</p> <p>활동 후 행사 수입의 차액은 운영비로 전환한다.</p>
<p>< 신 설 ></p>	<p>제70조(관리)</p> <p>본회의 재정관리는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임원회의의 승인으로 집행한다.</p>

<p>< 신 설 ></p>	<p>제6장 비상대책위원회</p> <p>제71조(지위)</p> <p>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가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장단의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② 위원장단 모두가 사퇴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p>< 신 설 ></p>	<p>제72조(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72조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지체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와 그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본회 위원이 모두 포함되어 구성된다. ③ 단, 기존 본회 위원이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해산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2.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기존 본회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을 지원자 중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p>< 신 설 ></p>	<p>제73조(위원장단)</p>

	<p>①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다.</p> <p>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의 위원장단이나 국장단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본회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혹은 재임 했던 사람으로 한다.</p> <p>③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본회의 위원장단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p>
<p>< 신 설 ></p>	<p>제74조(업무 및 권한)</p> <p>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에 준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p> <p>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위원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한다.</p> <p>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위원장단의 구성기간 동안 본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p>
<p>< 신 설 ></p>	<p>제7장 기타</p> <p>제75조(시행세칙)</p> <p>본 개정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p>
<p>< 신 설 ></p>	<p>부칙</p> <p>제76조(회칙의 효력)</p> <p>이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p>

	한다.
< 신 설 >	제77조(회칙 개정의 기록) 회칙 개정에 대한 기록에 대한 책무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진다.
< 신 설 >	제78조(회칙개정) ① 본 회칙은 2006년 4월 3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1차 개정회칙이다 ② 본 회칙은 2013년 8월 3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2차 개정회칙이다. ③ 본 회칙은 2015년 8월 22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3차 개정회칙이다. ④ 본 회칙은 2017년 8월 9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4차 개정회칙이다. ⑤ 본 회칙은 2019년 8월 9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5차 개정회칙이다. ⑥ 본 회칙은 2024년 2월 2일 제1차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제6차 개정회칙이다.

학생복지위원회칙 전부개정회칙안 목적 및 경 위

1. 개정 목적 및 경위

COVID-19 이후 변화된 단체의 활동 범위와 기간을 반영하고, 단체 운영에 있어 모호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함

성격이 다른 회의를 구분하고 임원진 선출 과정을 단체 운영 상황에 맞게 명시함

2. 조문별 비교

현 행	개 정 안
<p>제 1 장 총칙</p> <p>제1조(명칭)</p> <p>본회는 KAIST 학생복지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p>	<p>제1장 총칙</p> <p>제1조(명칭)</p> <p>본회는 KAIST 학생복지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p>
<p>제2조(소재)</p> <p>본회의 소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이하 '본원') 내로 한다.</p>	<p>제2조(소재)</p> <p>본회의 소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이하 '본원') 내로 한다.</p>
<p>제3조(지위)</p> <p>본회는 학내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사업</p>	<p>제3조(지위)</p> <p>본회는 학내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사업</p>

<p>을 수행하는 총학생회장단 산하 상설위원회이다.</p>	<p>을 수행하는 총학생회장단 산하 상설위원회이다.</p>
<p>제4조 (목적): 본회는 민주주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학내 복지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합리적 소비 풍토를 조성하여 쾌적한 교육여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목적) 본회는 학내 복지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합리적인 소비 풍토를 조성하여 쾌적한 교육 여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결기구 : 위원회의, 임원회의, 국별회의 2. 집행기구 : 위원장단, 집행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집행부는 사무국, 복지국, 문화국으로 구성한다. 2. 사무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본회의 회계업무 및 재무를 담당한다. 3. 복지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복지문제를 담당한다. 4. 문화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교내 문화사업 및 캠페인에 관한 문제를 담당한다. 1. 기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특별기구 	<p>제5조(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회는 국원과 지도교수로 구성된다. ② 본회는 업무를 위하여 위원장단을 포함한 임원진을 둔다. ③ 본회는 사무국, 복지국, 문화국을 둔다. ④ 본회는 홈페이지팀, 디자인팀, 홍보팀, 복지팀을 둔다. ⑤ 위원장의 권한으로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p>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p>	<p>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p>
<p>제7조(업무 및 권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는 본회에 관련된 모든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 	<p>제7조(업무 및 권한) 본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p>

<p>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교내 당구장 운영권을 가진다. 3. 중앙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4. 전체 학생회 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5. 위 사업의 실현을 위한 연대사업을 전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 회에 관련된 모든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교내 코인노래방 운영권을 가진다. ③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④ 전체 학생회 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⑤ 위 사업의 실현을 위한 연대사업을 전개한다.
<p>제8조(구성과 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위원은 KAIST 학사 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선량한 품성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2. 본회의 위원은 정위원과 수습위원으로 구성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위원은 본회 위원 중 수습위원 임기 1개월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h2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구성원</h2> <h3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위원</h3> <p>제8조(구성과 자격)</p> <p>본회의 위원은 수습위원, 정위원, 명예위원으로 구분한다.</p>
<p>제9조(임기) : 본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위원장단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0. 단 재선임 의사가 있는 기존 위원의 요구 시 위원장이 재선임할 수 있다. 	<p>제9조(위원의 의무)</p> <p>모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② 위원 회의에 참석할 의무 ③ 임원회의의 허가를 받는 적절한 사유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계절학기에 남아 본회 사업을 수행할 의무 ④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활동 및 사업에

<p>0.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적절한 사유로 본회를 탈퇴하게 될 경우에는 임기간의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p> <p>0. 임기간에 대하여 매 6개월마다 리더십 마일리지를 정위원과 수습위원에게 지급한다.</p> <p>0. 본회의 위원은 수습위원으로 최초 선발 후 36개월 이내에 재선임 될 수 있다.</p>	<p>참가하며 본회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p>
<p>제10조(권리) : 본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언권,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와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복지 시설의 조사에 필요한 학내 자료 및 시설물에 대해 학교 관계 당국의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4. 학우들의 제반 복지 문제에 관한 대변권을 가진다. 	<p>제10조(권리)</p> <p>본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와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의에 발언권, 의결권을 가진다. ③ 학생복지 시설의 조사에 필요한 학내 자료 및 시설물에 대해 학교 관계 당국의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학우들의 제반 복지 문제에 관한 대변권을 가진다.
<p>제11조(의무) : 본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활동 및 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2. 본회 위원은 위원회의에 참석 할 의무가 있다. 3. 본회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4. 본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임원회의의 허가를 받는 적절한 사유를 갖 	<p>제11조(선발)</p> <p>본회의 위원의 선발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회 위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중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와 임원회의의 심의 후 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본회 신규 선발 위원은 수습위원이 된다.

<p>고 있지 않은 경우, 본회 위원은 계절학기에 남아 본 회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p>	
<p>제12조(선발) : 본회 위원 의 선발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 위원은 KAIST 학부 총 학생회 정회원 중 공개 모 집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와 임원회의의 심의 후 위원장 이 선임한다. 2 본회 신규 선발 위원은 수 습위원이 된다. 	<p>제12조(징계 및 제명)</p> <p>본회는 다음과 같은 징계 및 제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 위원 회의, 임원 회의에 사전 승인 없이 연속 2회 불참 시 임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② 징계에 불응하는 경우 위원장의 권한으 로 제명할 수 있다. ③ 본회를 악용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실추 시켰을 경우, 심의 대상인 자를 제외한 위 원회의를 거쳐 전체의 2/3이상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④ 학우들의 제반 복지 문제에 관한 대변 권을 가진다.
<p>제13조(징계 및 제명)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징계 및 제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 위원 회의, 임원회의에 이유 없이 연속 3회 불참 시 임원회의 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 후 이에 불응할 경우 위원장의 권한으로 제명할 수 있다. 	<p>제13조(위원의 자격 박탈)</p> <p>위원장은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 를 2회 이상 받은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는 징계의 대 상이 되는 위원의 소명 기회를 포함하여 진행한다.</p>

<p>2 본회를 악용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을 경우, 심의 대상인 자를 제외한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전체의 2/3이상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p> <p>3 본회의 의결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도 전항에 준한다.</p>	
<p>제14조(이의 제기) : 본회의 위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야기되는 권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를 거쳐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p>	<p>제14조(벌금 징수)</p> <p>① 벌금은 회의, 행사에 지각하거나 불참한 위원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 징수를 면제한다.</p> <p>② 회의 지각은 개회 시각보다 늦게 참가하는 것으로 정한다.</p> <p>③ 행사 지각은 집합 시각보다 늦게 집합하는 것으로 정한다.</p> <p>④ 모든 벌금의 금액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의장과 함께 의결을 승인할 권리를 갖는다.</p> <p>⑤ 위원장은 기타 사유로 인한 벌금 징수에 관한 건을 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p>

<p>제 3 장 임 원</p> <p>제15조(구성) : 임원은 위원장단을 포함한 각 집행기구의 국장들로 구성된다</p>	<p>제15조(포상)</p> <p>위원장은 본원과 위원회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위원을 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p>
<p>제16조(위원장) : 본회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은 호선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친다. 2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회의, 행사 및 기타 사항을 총괄 주재한다. 3 위원장은 업무 필요상 학교 관계 책임자 및 업자와의 회담을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복지 자영 사업체의 물품 구매 입찰 및 계약에 학생 대표로 참가할 수 있다. 5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업무 보고의 의무가 있다. 6 기타 위원장에 준하는 직 	<p>제16조(수습위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회 위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중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와 임원회의의 심의 후 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수습 기간은 선발 직후부터 정위원 임명 시점까지로 한다. ③ 수습 기간은 이 회칙에서의 복지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수습위원은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진다.

<p>무를 수행한다.</p>	
<p>제17조(부위원장) : 본회의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위원장은 호선 후 전체 학생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하며 그 책임을 진다. 3 기타 부위원장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p>제17조(정위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장은 정위원의 평가를 거쳐 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수습위원만을 정위원에 임명한다. ② 정위원의 임명 시점은 겨울 대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정위원의 임기는 임명 시점부터 이듬해 가을학기까지로 한다.
<p>제18조(국장) : 본회의 국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출한다. 2 국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주최하는 임원회의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3 국장은 담당 국에 대한 사항을 총괄 주재한다. 4 국장은 국별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 	<p>제18조(명예위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장은 임기 동안의 본회 활동을 성실히 마친 정위원만을 명예위원에 임명한다.

제 4 장 회 의

제19조(위원회의)

- 1 위원회의는 본회의 최고 의 결기구이다.
- 2 본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3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부득이한 사항이 없을 시 매 주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 4 결의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 5 본회의 사업계획, 사업진행 등의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6 본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불참 시 사유를 회의 이전까지 위원장에게 사전 공지하여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2절 임원

제19조(임원의 구성)

- ① 본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복지국장, 문화국장을 임원으로 둔다.
- ②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장단이라 한다.

<p>제20조(임원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회의는 본회의 최고 심의기구이다. 2 정, 부위원장 및 각국의 국장으로 구성된다. 3 각 국장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4 본회의 업무특성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위원회의에 상정한다. 	<p>제20조(위원장)</p> <p>본회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장은 호선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친다. ②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회의, 행사 및 기타 사항을 총괄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필요상 학교 관계 책임자 및 업자와의 회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복지 자영 사업체의 물품 구매 입찰 및 계약에 학생 대표로 참가할 수 있다. 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업무 보고의 의무가 있다. ⑥ 기타 위원장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p>제21조(국별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별회의는 본회의 실무사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회의이다. 2 각 국장이 소집, 주관하며 부원들로 구성한다. 	<p>제21조(부위원장)</p> <p>본회의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위원장은 호선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친다.

<p>3 각 국의 제반업무를 심의 집행한다.</p> <p>4 각 국장은 국별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점을 위원회의에 상정 할 수 있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하며 그 책임을 진다.</p> <p>③ 기타 부위원장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p>
<p>제 5 장 재 정</p> <p>제22조(경비) : 본회의 재정은 교내 학부 당구장 및 기타 복지기금으로 충당한다.</p>	<p>제22조(국장)</p> <p>① 국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주최하는 임원회의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p> <p>② 국장은 담당 국에 대한 사항을 총괄 주재한다.</p> <p>③ 국장은 국별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p>
<p>제23조(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년도는 해당 연도의 봄 학기 개강일 부터 익년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로 한다.</p>	<p>제23조(임원 후보의 자격)</p> <p>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국별 국장의 자격은 제3차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임명 1년 이내의 정위원으로 한다.</p> <p>② 모든 임원의 자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p>
<p>제24조(관리) : 본회의 재정관리는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위원회의의 승인으로 집행한다.</p>	<p>제24조(임원의 선출)</p> <p>① 임원은 이 조에서 언급된 순서대로 선출</p>

	<p>한다.</p> <p>② 각 국별 국장은 가을학기 마지막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p> <p>③ 위원장단은 가을학기 마지막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p>
<p>제 6 장 호 선</p> <p>제25조(호선) : 본회의 위원장단은 본회 내부호선 후 전학대회 인준으로 임명된다.</p>	<p>제25조(임원 선출 선거)</p> <p>① 임원은 위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p> <p>② 임원 선출 선거에서의 후보는 각 임원 후보의 자격을 만족하는 정위원 중 자원하는 사람이다.</p> <p>③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과반일 때는 그 최고 득표자를 차기 임원으로 선출한다.</p> <p>④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과반이 아닐 때는 그 투표의 최저 득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득표자를 후보로 하여 다시 투표한다. 다만, 최저 득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득표자 가 1명일 경우에는 그 후보를 선출한다.</p> <p>⑤ 투표 결과 전원 동률일 때는 후보의 변경 없이 다시 투표하거나 의장이 모든 후보 각각에 대한 찬반 투표에 관한 건을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이 의결되면 찬성 득표가 가장 높은 후보를 선출한다.</p>

	<p>⑥ 찬반 투표 결과가 다음 각 호일 때는 다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득표자가 2명이며 최고 득표가 투표자의 과반이 아닐 때 2. 최고 찬성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p>⑦ 당선된 임원은 내부호선되어 전학대회의 인준을 거친다.</p>
<p>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전에 현재 임기 중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제26조(임원의 임명)</p> <p>모든 임원은 제3차 정기총회 (가을학기 마지막 회의)에서 임명된다.</p>
<p>제27조(선거권) : 본회의 선거권자는 본회의 위원으로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p>	<p>제27조(임원의 임기)</p> <p>모든 임원의 임기는 임명 시점부터 차기 위원장의 내부호선 시점까지이다.</p>
<p>제28조(피선거권) : 다음의 자격을 갖춘 본회의 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교에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다음 임기 동안 재학예정인 자. 2 본회의 위원 자격으로 2학기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p>제28조(임원직의 중임과 겸임)</p> <p>모든 임원직은 중임할 수 없다.</p>

<p>제29조(선거방법) : 본회의 선거는 본회의 위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p>	<p>제29조(임원의 탄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장은 다른 임원의 탄핵에 관한 건을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② 5명 이상의 정위원은 연서를 통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탄핵에 관한 건을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③ 가결된 탄핵안은 탄핵안이 상정된 총회의 폐회 직후부터 발효된다.
<p>제30조(등록) : 본회의 선거는 위원회의에서 선관위에 등록할 수 있다.</p>	<p>제30조(임원의 궐위 시 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장의 궐위 시 부위원장이 그 직위를 위임한다. ② 부위원장, 국장이 궐위 시 2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호선한다. 이 경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모든 회의의 의장은 제19조에 나열된 순서에 따라 정한다. ③ 임원의 궐위 시 임명되는 후임자의 활동은 중임 대상이 아니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p>제31조(당선) : 피선거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투표와 1/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p>	<p>제3장 회의</p> <p><u>제1절 총회</u></p> <p>제31조(총회의 구분)</p> <p>총회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로 구분된다.</p>

<p>제32조(승인) : 당선된 피선거권자는 전학대회의 인준을 거친다.</p>	<p>제32조(총회의 성립)</p> <p>총회는 정위원과 수습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p>
<p>제 7 장 비 상 대 책 위 원 회</p> <p>제33조(지위)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단의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2 위원장단 모두가 사퇴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p>제33조(총회의 의장)</p> <p>총회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의 탄핵에 관한 건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한다.</p>
<p>제34조(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지체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와 그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본회 위원이 모두 포함되어 구성된다. 3 단, 기존 본회 위원이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 	<p>제34조(총회의 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기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맞추어 의장이 소집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차 정기 총회(겨울 대회의)는 2월 첫째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2차 정기 총회(여름 대회의)는 8월 첫째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3차 정기 총회는 가을학기 마지막 위원회의가 있는 주 금요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 총회는 구성원의 일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p>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해산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2.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기존 본회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을 지원자 중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p>②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부위원장의 소집요구 3. 5명 이상 정위원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p>제35조(위원장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의 대표자, 혹은 국장단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본회 위원으로 재임중이거나 혹은 재임했던 사람으로 	<p>제35조(총회 참가 의무)</p> <p>모든 정위원과 수습 위원은 총회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p>

<p>한다.</p> <p>3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 위원장단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p>	
<p>제36조(업무 및 권한)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p> <p>1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에 준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p> <p>2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위원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p> <p>3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위원장단의 구성기간 동안 본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p>	<p>제36조(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무)</p> <p>총회 재석 인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p>
<p>제 8 장 부 칙</p> <p>제37조(회칙개정) : 본회의 회칙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발의와 출석위원 1/2 이상의 동의로써 개</p>	<p>제37조(총회 안건의 통과 요건)</p> <p>총회 안건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의 탄핵에 관한 건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회칙 개정 안건의 통과 요건은 별도로 정한다.</p>

정할 수 있다.	
제38조(발효) : 본 개정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8조(회칙 개정 안건의 통과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별 조항 개정 안건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발의와 출석위원 1/2 이상의 동의로써 개정할 수 있다. ② 전면 개정 안건의 통과 요건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9조(시행세칙) : 본 개정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39조(부재자의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결권을 가진 부재자는 군 또는 질병 휴학한 정위원 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정위원에 한한다. ② 의결권을 가진 부재자는 의사를 의장에게 표명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40조(회칙개정) : 본회의 회칙 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회칙은 2006년 4월 3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1차 개정회칙이다. 2 본 회칙은 2013년 8월 3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2차 개정회칙이다. 3 본 회칙은 2015년 8월 22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3차 개정회칙이다. 4 본 회칙은 2017년 8월 9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4차 	<u>제2절 위원회의</u> 제40조(위원회의의 구분) <p>위원회의는 정기 위원회의, 임시 위원회의, 정위원회의로 구분한다.</p>

<p>개정회칙이다.</p> <p>5 본 회칙은 2019년 8월 9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5차 개정회칙이다.</p>	
<p>< 신 설 ></p>	<p>제41조(위원회의의 의장)</p> <p>위원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한다.</p>
<p>< 신 설 ></p>	<p>제42조(위원회의의 소집)</p> <p>① 정기 위원회의는 정규학기 중 교양 시험 전 주와 교양 및 전공 시험 주간을 제외하 고 매주 월요일 21시 10분에 의장이 소집한 다.</p> <p>② 임시 위원회의와 정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 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부위원장의 소집요구 3. 5명 이상 정위원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p>< 신 설 ></p>	<p>제43조(위원회의의 참가 의무)</p> <p>모든 수습위원과 정위원은 위원회의에 참 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정위원회의의 경 우 6개월 이상 활동한 정위원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p>
<p>< 신 설 ></p>	<p>제44조(위원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무)</p> <p>위원회의 재석 인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의 무를 진다.</p>
<p>< 신 설 ></p>	<p>제45조(위원회의의 안건의 통과 요건)</p>

	위원회의 안건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신 설 >	제46조(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의 책임)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서기를 지정해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을 진다.
< 신 설 >	제47조(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효력) 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은 변경되거나 파기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 신 설 >	<u>제3절 임원회의</u> 제48조(임원회의) 임원 회의는 본회의 최고 심의 기구이다.
< 신 설 >	제49조(임원회의의 구성) 위원장단 및 국장단으로 구성된다.
< 신 설 >	제50조(임원회의의 성립) 임원회의는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신 설 >	제51조(임원회의의 의장) 임원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한다.
< 신 설 >	제52조(임원회의의 소집)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① 위원장의 소집요구 ② 부위원장의 소집요구

	③ 3명 이상의 임원의 연서에 따른 소 집요구
< 신 설 >	제53조(임원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무) 임원회의의 재석 인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
< 신 설 >	제54조(임원회의의 안건) 임원회의의 안건은 본회의 주요 의결사항으 로 한다.
< 신 설 >	제55조(임원회의의 안건의 통과 요건) 임원회의의 안건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된다.
< 신 설 >	<u>제4절 국별회의</u> 제56조(국별회의) 국별회의는 본회의 실무사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회의이며 각 국의 제반 업 무를 심의 집행한다.
< 신 설 >	제57조(국별회의의 구성) 각 국장이 소집, 주관하며 해당위원들로 구 성한다.
< 신 설 >	제58조(국별회의의 의장) 국별회의의 의장은 국장으로 한다.
< 신 설 >	제59조(국별회의에서 국장의 책임) 각 국장은 국별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점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신 설 >	제4장 활동

	<p>제60조(위원의 선발)</p> <p>① 본회는 정위원이 실시하는 선발 과정(이하 '리크루팅')을 거쳐 수습위원을 선발한다.</p> <p>② 리크루팅은 1차 서류 평가와 2차 면접으로 진행된다.</p> <p>③ 추가 리크루팅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위원회의를 거쳐 추가 리크루팅을 실시할 수 있다.</p>
<p>< 신 설 ></p>	<p>제61조(위원)</p> <p>모든 위원은 사무국, 복지국, 문화국 중 한 국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활동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외로 한다.</p>
<p>< 신 설 ></p>	<p>제62조(상근)</p> <p>① 회의를 진행하는 정규학기 주간 동안 평 일 19-21시에 학생복지위원회 단실에서 진행된다.</p> <p>② 위원장이 승인하는 사유가 있을 시 상근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p> <p>③ 상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과 단실 관리를 기본 업무로 3명 이상의 위원을 배정한다.</p> <p>④ 단기 사업을 상근 시간에 진행할 때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충분한 인원을 배정해 업무가 원활하도록 한다.</p> <p>⑤ 상근 시간에는 단실의 문을 개방하고,</p>

	<p>단실 내부의 모든 위원은 방문자를 맞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p>
< 신 설 >	<p>제63조(정기 사업)</p> <p>① 정기 사업은 온라인 캘린더, 딸기파티, 정기 북마켓, 추석 귀향버스 진행, 학기말 택배 사업, 야구잡바 및 룡패딩 공동구매를 일컫는다.</p> <p>② 매년 정기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 신 설 >	<p>제64조(상시 사업)</p> <p>상시사업은 대여사업, 코인노래방을 일컫는다.</p>
< 신 설 >	<p>제65조(행사 지원)</p> <p>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p>
< 신 설 >	<p>제5장 재정</p> <p>제66조(재정의 구성)</p> <p>① 본회의 재정은 운영비와 자치활동비로 구분한다.</p> <p>② 운영비는 교내 코인노래방의 수입 및 기타 재정적 지원으로 구성한다.</p>
< 신 설 >	<p>제67조(벌금의 이용)</p> <p>제2장 제14조에 따라 징수한 벌금은 자치활동비로 이용된다.</p>
< 신 설 >	<p>제68조(회계년도)</p>

	<p>본회의 회계년도는 해당 년도의 봄학기 개강일부터 익년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로 한다.</p>
< 신 설 >	<p>제69조(행사 수입 차액의 처리)</p> <p>활동 후 행사 수입의 차액은 운영비로 전환한다.</p>
< 신 설 >	<p>제70조(관리)</p> <p>본회의 재정관리는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임원회의의 승인으로 집행한다.</p>
< 신 설 >	<p>제6장 비상대책위원회</p> <p>제71조(지위)</p> <p>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가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장단의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② 위원장단 모두가 사퇴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신 설 >	<p>제72조(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72조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지체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와 그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본회 위원이 모두 포함되어 구성된다. ③ 단, 기존 본회 위원이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해산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2.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기존 본회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을 지원자 중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p>< 신 설 ></p>	<p>제73조(위원장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다.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의 위원장단이나 국장단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본회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혹은 재임 했던 사람으로 한다. ③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본회의 위원장단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p>< 신 설 ></p>	<p>제74조(업무 및 권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에 준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위원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위원장단의 구성기간 동안 본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신 설 >	<p>제7장 기타</p> <p>제75조(시행세칙)</p> <p>본 개정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p>
< 신 설 >	<p>부칙</p> <p>제76조(회칙의 효력)</p> <p>이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p>
< 신 설 >	<p>제77조(회칙 개정의 기록)</p> <p>회칙 개정에 대한 기록에 대한 책무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진다.</p>

<p>< 신 설 ></p>	<p>제78조(회칙개정)</p> <p>① 본 회칙은 2006년 4월 3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1차 개정회칙이다</p> <p>② 본 회칙은 2013년 8월 3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2차 개정회칙이다.</p> <p>③ 본 회칙은 2015년 8월 22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3차 개정회칙이다.</p> <p>④ 본 회칙은 2017년 8월 9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4차 개정회칙이다.</p> <p>⑤ 본 회칙은 2019년 8월 9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5차 개정회칙이다.</p> <p>⑥ 본 회칙은 2024년 2월 2일 제1차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제6차 개정회칙이다.</p>
----------------------	---

제32대 학생복지위원회 겨울 대회의 회의록

일시: 2024. 2. 2.

서기 : 김준태

논의안건	위원장단 논의안건
------	-----------

제32대 학생복지위원회 정위원 임명식 진행

지인 : 정의원이 임명되면 앞으로 2 년의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단도 임명을 받아야했어서 임명장을 준비했습니다. ^^ 앞으로도 함께 열심히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당분간의 일정 ~ 개강파티

1. 새내기새로배움터

- 대면 새터에 맞춰 영상 녹화 대신 앞에 나가서 직접 발표할 예정.
- 동아리 소개백서에는 학복위 소개글을 담지 않고, 총학 차원에서 작성하는 책자에만 소개를 실음.

2. 상근 및 회의 시작일

- 개강일 2/26(월)에 첫 회의와 상근 동시 시작

3. 해오름식

- 매년 신학 3 층 단체들이 해오름식이라는 행사를 열어 새내기들에게 본인들을 소개해왔음

- b. 예년에는 신학관 오픈스페이스에서 부스 운영, 올해 동아리 박람회와 같은 타임라인(23 일 금요일)에 운영 예정
- c. 진행 여부와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총학에서 소정의 부스 지원금 O)

올해는 동아리 박람회와 함께 진행하면서 (스کم에서) 총학에서 소정의 부스 지원금을 지급함.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우혁 : 우려를 조금 표하는데, 동아리 박람회랑 시간상 동시에 진행하면 자치단체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안와서 찬밥신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인 : 리크루팅 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는 학우들이 관심을 가져야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아리 박람회 가는 길에 부스를 운영하는것. 작년에 해봤으면 알겠지만 부스를 운영한다고 해서 어그로가 끌리는건 아니기도 하고, 이미 정해져있는 부분이라 딱히 바꿀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해원 : 예산으로 어그로를 잘 끌리는 상품을 준비하면 어떨까요

형준 : 예산은 어느정도?

지인 : 소정의 예산이라고는 알고있고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다.

서진 : 오픈 단실이랑은 다른걸까요? -> 네

지민 : 작년꺼 우려먹고 상품을 좋은걸 걸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과자같은거를 줬던거 같습니다.

지인 : 작년에 공간위가 솜사탕 기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학생복지위원회 피켓 들고 사업 소개하고 택배 무게맞추기, 사업 다 불러서 말하기 등등 했었어요

4. 리크루팅 기간

- a. 2/23(금) 리크루팅 공지
- b. 개강 2 주 후인 3/8(금)~3/10(일) 면접 진행

면접을 상당히 늦게 진행하는 편이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민 : 다른 동아리 합격해서 나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리크

루팅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주혁 : 이미 동아리 면접 기간이 끝난 경우가 많아서, 면접 기간이 늦은 학복위에 지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빨리 하는것도 좋은 효과가 있지만, 늦게 했을때도 어느정도 장점은 있을 수 있어요.

효우 : 작년에 늦게 진행한 이유 있을까요?

지민 : 다른 동아리 떨어진 애들 뽑기?

지인 : 다른 동아리 붙어서 나갔을 애는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 한명한명이 아쉬울 수도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빨리 뽑으면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면접 보는 입장에서 피로할 수도 있긴 합니다.

우혁 : 리크루팅을 한다는 홍보자체를 좀 일찍 하되 면접 기간은 현행 유지를 하는건 어떨까요? 신청은 장기간으로 받고

형준 : 면접을 두번 보는건 뻥셀까요? 결과는 최종으로 다같이 하되 면접은 조금 빠르게 하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해원 : 면접을 빨리 볼꺼면 아예 빨리 봐야지 두번으로 나누는건 좀 그럴 것 같아요.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다는 것이 새내기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될 것 같고, 두번째 면접에서 면접을 보는 사람은 준비 기간이 더 긴편인데 약간 불공정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결론!!! 현행 유지의 발전형 (리크루팅을 한다는 홍보자체를 좀 일찍 하되 면접 기간은 현행 유지를 하는건 어떨까요? 신청은 장기간으로 받고)

c. 면접에 대한 피드백

d. 2월 13일까지 포스터를 만들어서 주문을 넣고 19일, 20일에 부착

우혁 : 스킴 아트 하면 안될까요?

좋은 생각! (23학번이 하는걸로 ^^)

- e. 면접 진행 기간에 대한 논의
- f. 신청서 폼에 어떤 질문을 받을지? / 서류떨이 있어야하는지 않아야하는지?

5. 오픈 단실

- a. 진행 여부와 진행 날짜

정빈 : 오픈단실을 꼭 해야하나요? 예산 문제도 있고. 상품비로는 돈을 많이 못쓰긴 해요

지민 : 줌으로 오픈단실을 했었는데, 실제로 오픈단실 온 사람들을 뽑았어요.

해원 : 상품을 못주면 어그로를 끌면 어떨까요? 여섯줄의 경우 경도를 합니다

우혁 : 오픈 단실의 개념을 야잠 샘플 시착과 결합하면서 엮으면 좋지 않을까요?

지인 : 해오름식을 준비하면서 오픈단실이랑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용 겹치니까 잘 진행하면 될 듯

형준 : 엔제리너스가 생겼으니 그쪽 경로를 공략하면 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찬성 : 13명

반대 : 4명

- b. 3/4(월) -> 일단 픽스. 오픈 신학관 같이하자(날짜 미정) 이런거 회의록 확인해봐야할 수도

- c. 진행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

6. 개강파티

a. 신입생 선발 이후인 3/11 (월), 홀랄라

● 회의 및 상근 계획

1. 회의

a. 회의 방식

- i. 매주 월요일 9시 10분 학복위실 대면 회의
- ii. 회의 종료 후 필요한 상근 및 행사 교육

b. 회의 안건

- i.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담당자들은 안건을 통해 진행상황 보고
- ii. 행사 종료 후 행사 진행에 대해 아쉬웠던 내부 피드백(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회의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월요일 회의때 바로바로)

2. 상근

a. 상근 메뉴얼

- i. 전날 상근일지 확인 (~7시)
- ii. 학복위 홈페이지에서 대여 현황 확인 (~7시)
- iii. 상근 진행
- iv. 전날의 상근일지를 복사해 상근일지 작성
- v. 학복위실 쓰레기 청소

b. 상근일지

- i. 대여물품 개수 적는란에 총 물품 개수(최대 개수) 추가 예정
- ii. [한것] [할것] 칸 양식 정비 → [오늘 한 일] [앞으로 할 일] [비고] [앞으로 할 일] 칸에는 그 일을 몇일에 해야되는지 표시

ex) 3/14 상근일지

[오늘 한일] 천막대여(홍길동)

[앞으로 할일] 3/15 - 천막 반납 받기

[비고] 앞으로 버너 반납받을 때 상태 확인 해주세요, 총학 사람이 찾아와서 ~~ 부탁드립니다.

- iii. 새로 상근일지를 작성할 때 [앞으로 할 일]칸을 함부로 지우면 안됨. 그 일이 완료되었을 때만 지우고, 완료가 안됐으면 계속 복사될 수 있게 남겨두기
- iv. 상근 일지에 내용을 적을 때 피드백톡에 공유되면 좋을 것들이 많을 것이니 상근자가 공유해주기
- v. 딸기파티/잔여표 판매 등 특수 사업기간 제외 청소 기본 업무

● 추후 학복위 운영 계획

1. TF 재정비

택배	김정빈	김재현	1
----	-----	-----	---

문화국	22	23	24
온라인 캘린더	문홍윤	김서진	1
통패딩	문홍윤	신효우	1
디자인 업무	문홍윤	조형준	2

복지국	22	23	24
북마켓	고지민	곽현 김하민 방준수	2
딸기파티	고지민	이서준 김우혁 손해원 김하민 곽현	0
추귀버	고지민	이서준 손해원 방준수	3

	22	23	24
코인노래방		김우혁	(자율)
홈페이지	김준태	김서진 이서준 손해원	(자율)

- a. 각 TF 별 특방을 만들고, 거기에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 상황 트래킹

2. 리크루팅 인원

- a. 선발 희망 인원
 - i. 12명 → 사무국 : 3명, 문화국 : 4명, 복지국 : 5명
- b. 선발 방식
 - i. 작년에는 선발 이후 봄학기에 신입생 부서 배정

지인 : 유도리있기 23이 알아서 잘 정하면 됩니다. 12명을 뽑아도 되고 14명을 뽑아도 되고 뽑고싶은사람있으면 더 뽑아도 되구요

3. 학복위원 대여 과정 정리

- a. 우선 피드백톡에 무조건 보고 (빌릴 물품 & 반납할 날짜)
- b. 상근 기간일경우 학복위 홈페이지에서 대여신청

4. 차기 위원장/국장단

- a. 여름대회의 쯤 부터 23 자발적으로 논의

b. 학생복지위원회 임기는



5. 대여의 날, 청소의 날

- a. 2/25(일) 대여의 날 진행
 - i. 각 물품 개수와 작동 상태 전부 확인
 - ii. 진행 인원(4인) : 대여 TF장 + (복불복~)
=> 박주혁, 조형준, 손해원, 김우혁

- b. 청소의 날
 - i. 기본적으로 상근 시 청소 진행
 - ii. 진행일을 1주/9주차 회의날로 고정
 - iii. 매 회의 이후 가볍게 청소당번 정하기

6. 친목사업

- a. 친목조
 - i. 22 1명 / 23 2~3명 / 24 2~3명

- b. 상근밥
 - i. 22, 23 이 상근밥 24 꺼 N빵
 - ii. 상근밥 계좌에 돈넣는거랑 별 차이 없습니다.
 - iii. 상근 횟수를 잘 맞춰보겠습니다.

- c. 짝선짝후

7. 벌금

- a. 기존 벌금 - 회의만 1분당 천원, 최대 만원

- b. 상근 벌금(안오면) - 오천원
- c. 실무 빠지면? - *** 삼만원 ***

지인 : 한학기에 한번은 회의 라이프. 회의 10분전 변경

8. 계정, 소통창구, 참고, 열쇠

- a. 이번 LT 안에 비밀번호 바꾸고 재공지 계획

9. 신입국원 프로젝트

전체적인 피드백

- a. 진행 과정이나 방식 (팀 구성, 심사 방식, 사업 진행 등)
- b. 진행 일정
 - i. 가을학기 진행(현행 유지)

주혁 : 약간 선배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젠 우리가 선배니까 잘 이끌어보겠습니다 !!!

형준 : 1등한테 상품을 주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서진 : 조끼리 주제가 안겹치면 좋겠습니다.

해원 : 중간발표랑 최종발표만 하지 말고 주제 정하기 기간을 두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혁 : 신국프 기간(시작~데드라인) 회의때 신국프에서 선배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의때 미리미리 말해주면 겹치는 일이 없지 않을까요?

지인 : 너무 주제정하는거에 집중하지말고 사업 진행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태 : 영양가 있는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혁 : 신입생들이 하는게 많이 없어서 봄에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민 : 봄에 하는게 너무 없어서 23, 24끼리 부스 운영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봄부터 저걸 시작한다고 해서 활동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인 : 신국프가 큰 프로젝트다 라는걸 지속적으로 봄부터 언급하는게 좋을 것 같
아요.

우혁 : 봄에 친목조를 신국프 조로 가져가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 친목조
랑 연계해서 진행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친목조를 짤 때 학번을 균일하게 분
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같은 경우에 21학번분들중에 바쁜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출석률을 기준으로 해서 3~4명정도는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묶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 못나온다고 하면 못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논의안건	사무국장 논의안건
------	-----------

- 장부 혹시 아직 안 쓰신 분들 작성해주세요! ~ 2/12(월)까지
(영수증 첨부 필수)

13일 이후에 사무국장에게 개인톡하면 각오하셔야합니다!

- 코노 통장(김재호 명의) 사용 금지!!!
- 신규 통장 개설(사무국 + 코노 통장)

코노통장 / 사무국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코노 통장 : 김우혁 (개강 전까지)

사무국 통장 : 김재현 (개강 전까지)

자세한 사항은 효우와 사무국장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보고안건 #1] 사무국

■ 2023 가을학기 대여 사업

작성자 : 박주혁

1. 사업 진행 과정

- 1) 홈페이지 사전 예약
- 2) 상근시간 내 대여 및 반납

2. 사업 결과 및 정산

1) 사업 결과

(1) 대여 횟수

18년 봄 : 97건(정상반납 92건, 연체반납 5건)

19년 봄 : 81건(정상반납 78건, 연체반납 3건)

21년 가을: 3건(정상 반납 3건, 연체 반납 0건)

22년 봄 : 16건(정상 반납 14건, 연체 반납 2건)

22년 가을 : 20건(정상 반납 19건, 연체 반납 1건)

23년 봄: 91건(정상 반납 91건, 연체 반납 0건)

23년 가을: 34건(정상 반납 34건, 연체 반납 0건)

2) 현재 보유 물품 개수 (2024.1 기준)

버너	5	코펠	2
불판	2	아이스박스(대형,	1/1

		소형)	
집계/가위	10/5	돗자리	23(특대) + 9(대)
프라이팬	3	천막	6
앰프/마이크(유선, 무선)/릴	1/1(고장남),1/2	삼각대 (대형/소형)	4/1
이젤	4	빔프로젝터	1

3) 대여 물품 구매

구입일	대여물품명	수량	금액(원)
2023/10/30	3x3x6 천막	2	400000

총학이 돗자리 8개 선물해줌

4) 정산

22 가을	장부	금고(동전포함)	계좌	오차
대여료	+79000	+0	+44000	+35000
연체료	0	0	0	0
파손, 분실	0	0	0	0
보증금	170000- 1700000=0	0-70000=- 70000	100000- 40000=60 000	+70000, -60000

대여 사업 금고 총이에 얼마 들어왔으면 얼마 들어왔다. 이름 쓰고 날짜쓰고 하는 종이

에 꼭 돈 왔다갔다 하는거 써주세요~

3. 설문조사 결과 및 학우 피드백

1) 진행되지 않음

4. 논의 사항

1) 천막 고장으로 인한 구매

- (1) 택배할때 고장 1
- (2) 새학이 빌려가서 부신거 1
- (3) 멀쩡한거 4개 => 총 6개

2) 천막 파손 방지 대책

- (1) 천막 대여해줄 때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두라고 리마인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2) 비, 바람에 잘 날아가니까 조심해달라고 (방치 X)

3) 대여/반납시

(1) 대여료

1. 현금으로 받았을 시 대여 사업 금고 이용하시고 금고 장부에 꼭 써주세요.
2. 계좌이체로 받았을 시 계좌 확인만 잘 해주세요.

(2) 보증금

1. 현금으로 받았을 시 대여 사업 금고 이용하시고 금고 장부에 꼭 써주세요.
2. 계좌이체로 받았을 시 계좌 확인만 잘 해주세요.
3. 보증금을 현금으로 환급할 시 대여 사업 금고 이용하시고 금고 장부에 꼭 써주세요.
4. 보증금을 계좌이체로 환급할 시 계좌 확인 잘 해주시고 구글 드라이브 604 번에 장부 작성해주세요.

(3) 연체료

1. 현금으로 받았을 시 대여 사업 금고 이용하시고 금고 장부에 꼭 써주세요.
2. 계좌이체로 받았을 시 계좌 확인만 잘 해주세요.

- 3월 회의 끝나고 대여사업 담당자가 24에게 교육 진행 예정 (대여 관련)
- 금고 장부를 반드시 써라.

■ 2023 가을 학기말 택배사업

작성자 : 김재현

1. 사업 진행 과정

1. 지난 학기에 이어 롯데 글로벌 로지스와 사업 진행

기말고사 기간에 진행

2. 사업 진행 장소 및 일시

박스 판매: 12.13(수)에 부스 설치 후 회사 직원분들이 직접 판매

택배 수거: 12.15(금), 12.16(토), 12.18(월)로 공지가 되었지만, 잔여자 대상으로 12.19(화)에도 남은 택배 수거

3. 택배 박스의 크기와 가격은 저번 학기와 동일 (500*400*360 / 2000원)

4. 박스 판매 가격 2000원 모두 학생 부담

5. 택배 비용: 1박스 당 6,000원 (착불, 20kg), 제주권 추가 운임 3,000원

· 배송비 6,000원으로 저번학과와 동일

· 에어캡 무상 제공 / 테이프 개당 1,000원

6. 저번 학기와 마찬가지로 전자운송장과 수기운송장을 병행

7. 포스터, 대자보, 카드뉴스 등의 홍보 방식은 저번 학기와 동일하게 진행

2. 사업 결과 및 정산

- 기존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1,000 장 이상)

3. 설문조사 결과 및 학우 피드백

: 진행되지 않음

4. 논의 사항

- 택배 사업 진행시 천막(날씨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못했음) 사용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023 가을 설문조사

작성자 : 김준태

1. 사업 진행 과정

- 1) 사업 진행 일정 : 상시(2023.09.02 ~ 2024.01.30)
- 2) 설문조사 링크 : <https://url.kr/5yw47e>
- 3) 사업 내용 : 2023 년 봄학기부터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여 학우들이 언제든지 통합 설문조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시하였다. 2023 년도 하반기에 진행한 전체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하고자 상시 설문조사를 수행

2. 사업 결과 및 정산

- 1) 상시 설문조사 진행 중 2 명이 야구잡바 공동구매 사업에, 1 명이 추석귀향버스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3. 설문조사 결과 및 학우 피드백

4. 논의 사항

1) 사업 성과

설문조사가 특정 사업이 종료될 때만 진행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상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면 모든 사업에 대해 전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세 명의 학우만 사업에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문제점이 있었다.

2) 미달 목표

상시 설문조사 참여자는 총 3명으로, 지난 년도 같은 분기에 비해 극소량 증가한 수치에 불과하다. 이는 상시 설문조사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3) 제언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등의 SNS와 커뮤니티에 상시 설문조사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사업이 진행될 때 마다 타 TF와의 협업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설문조사를 유도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이다.

[보고안건 #2] 복지국

■ 2023 가을학기 북마켓

작성자 : 곽현

1. 사업 진행 과정

1) 사업 소개

- (1) 카이스트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중고 책들을 위탁 받은 후 다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사업이다.
- (2) 정해진 기간에 진행되는 정기 북마켓 사업을 진행하였다.
- (3) 대면으로 위탁과 구매를 진행하였다.

2) 사업 날짜

- (1) 위탁: 6/15(목) ~ 6/16(금) 16:00 ~ 18:00
- (2) 추가 위탁: 8/28(월) ~ 8/29(화) 19:00 ~ 21:00
- (3) 정기 판매: 8/30(수) ~ 8/31(목) 19:00 ~ 21:00.

3) 사업 진행 방식

(1) 책 위탁 방법

1. 위탁 예약 기간 내에 구글폼에 위탁자의 정보, 책의 정보를 기입한다.
2. 방문 가능한 시간을 결정하여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위탁 시간을 입력한다.
3. 입력한 시간에 학복위 단실에 방문하여 학복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책을 위탁한다.

(2) 책 구매 방법

1. 책 목록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 구매할 책을 결정한다.

2. 판매 기간에 신학관 1층 다용도실에 방문하여 책을 확인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3. 상근자를 통해 구매자의 정보와 책의 정보를 기입한 뒤 결제한다.

2. 사업 결과 및 정산

- 1) 새로 위탁된 책: 30권
- 2) 책 판매: 26권
- 3) 남아있는 책: 217권
- 4) 북마켓 판매 총액: 314,000원
- 5) 북마켓 판매대금 회수: 118,000원
- 6) 기타: 0
- 7) 총 + 196,000원

3. 설문조사 결과 및 학우 피드백

- 1) 설문조사 결과
 - (1)
- 2) 학우피드백

4. 논의 사항

2024 봄학기 사업계획에서 다룰 예정 (여기선 패스)

■ 2023 추석귀향버스

작성자 : 이서준, 손해원

1. 사업 진행 과정

1) 수요조사

- (1) 버스 출발일이 9/27(수)로 정해진 상태에서 8/13(일)~8/20(일)까지 출발 시간, 이용 노선, 신설 희망 노선을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함
- (2) 카이스트 메일을 통해 학생 전체에게 구글폼 응답을 받음
- (3) 총 889 개의 응답을 받았으며, 설문 결과 청주공항 노선이 신설됐으며 9/27 (수) 16:30 으로 출발 시간이 확정됨
- (4) 총 17 개 노선, 4 개 경유 지점으로 21 종류의 표를 판매함

2) 버스 표 판매

- (1) 9/19 (화) 20:30~21:30 에 상행선 표, 9/20 (수) 20:30~21:30 에 하행선 표를 창의학습관 1 층 로비에서 판매함
- (2) 원래 올림홀이 표 판매 장소였으나 이번에는 타 단체의 사용으로 인해 로비에서 판매함
- (3) 9/21(목), 9/22, 9/25, 9/26 상근시간(19:00~21:00) 동안 학복위실에서 잔여표 판매를 진행함

3) 버스 탑승

- (1) 시간: 9/27 (수) 16:30
- (2) 장소: 대강당(E15) 앞

2. 사업 결과 및 정산

사업 년도	2021	2022
통장 입출금 총계	6,407,001	6,073,500

버스 대절 비용	-7,600,000	-7,920,000
총 사업 비용	-1,192,999	-1,846,500

	2023
현금 입금	2,220,000
통장 입출금 합계	8,894,000
버스 대절비용	-22,550,000 (학복위 지불비용 8,030,000 포함)
고객경영팀 지원금	14,520,000
총합	3,084,000

*노선 별 표 가격 및 판매 수(총 표 수/팔린 표 수)

- 수원/안양, 원주/강릉, 광주/목포, 순천/여수, 마산/창원은 모두 경유 지점/종점
- 수원/안양은 45석 일반 1대, 28석 우등 1대를 빌려서 45석 일반 버스는 수원을 경유하여 안양을 종점으로 함
- 원주/강릉은 45석 일반 1대를 빌려서 총 45석 중 41석의 자리가 이용됨

- 광주/목포는 45석 일반 1대, 28석 우등 1대를 빌려서 총 73석 중 72석의 자리가 이용됨
- 순천/여수는 45석 일반 1대를 빌려서 총 45석 중 39석의 자리가 이용됨

상행		하행	
동서울종합터미널(10,000)	45/45	광주종합버스터미널 (10,000)	73/54
센트럴시티터미널(10,000)	73/71	목포종합버스터미널 (12,000)	73/18
당산역(10,000)	45/44	순천종합버스터미널 (18,000)	45/26
인천종합버스터미널(10,000)	45/39	여수종합버스터미널 (18,000)	45/13
수원종합버스터미널(9,000)	45/42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13,000)	73/72
안양시외버스터미널(10,000)	28/23	서면(18,000)	73/71
일산 백석역(12,000)	28/28	해운대역(18,000)	45/32
분당성남종합버스터미널 (10,000)	45/44	포항 고속버스터미널(16,000)	28/26
원주시외버스터미널(12,000)	45/26	창원시외버스터미널 (마산 경유) (17,000)	73/60
강릉시외버스터미널(18,000)	45/15	울산시외버스터미널(17,000)	45/33
청주공항(6,000)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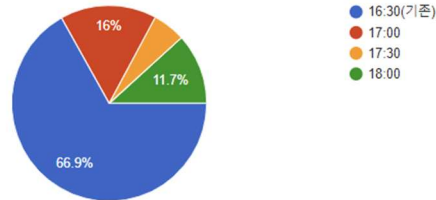
3. 설문조사 결과 및 학우 피드백

1) 설문조사 결과

- 학생복지위원회 2023 통합 설문조사 [학생복지위원회 상시 사업별 설문조사]
 - 응답자 3명 중 추석귀향버스 사업 응답자 1명
 - 설문조사 홍보가 있으면 좋을 듯
 - 오프라인 구매 대기 줄이 너무 길어서 매우 불만족, 온라인 전환 요구
 - 버스 출발 시간이 이르다고 하심

- 4 시 반 vs 6 시 논의하다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4 시 반으로 확정할 것

출발 시간
응답 881개



2) 기타 피드백 사안

- 차 두 대가 고지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한 컴플레인
- 경유 노선 문제 상황
 1. 기사님이 경유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 회사 측 통보에 문제가 있었음
 2. 경유 목적지가 공지사항과 달라 혼란 발생 : 회사가 학복위에 알려준 사실과 달랐음

음

→ 계약서 작성(문서화 작업)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음 (14차 정기회의록 참고)

4. 논의 사항

- 1) 추석귀향버스 온라인 표 판매 관련
 - 지난 여름 LT 때 ① 본인확인 수단 필요함 ② 새로 만들기 시간이 촉박 ③ 환불 시 장부 작성에 어려움 등등의 의견이 있었음
 - 이번에 딸기파티도 예약 시스템을 만드는데, 추귀버도 온라인 표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도해볼 것인지?
- 2) 청주공항 노선 유지 여부 : 작년 탑승 명단 확인해보니 4 명 이용하셨음 -> 없앨 예정
- 3) 추귀버 설문조사 홍보 여부: 2022 년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당시는 30 명 이상) 너무 적은 응답 수...
- 4) 추귀버 홍보물 최종 점검: 인스타 게시물과 타 게시물의 내용이 달라 혼선을 준 문제가 있었음, 이를 방지하려면 최종적으로 게시물 및 홍보물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5) 실무 내용 (추귀버 이후 정기회의에서 나왔던 피드백 정리)
 - (1) 실무자 결손 발생 시 1 인이 버스 2 개 컨트롤해야 하는 문제 발생
 - (2) 실무 시 고객 컴플레인 대응 메뉴얼을 준비 및 숙지 해두는 것의 필요성
 - (3) 표 구매 후 실제 탑승하지 않은 사람들 목록을 DM 으로 받아서 더 편리하게 처리할까?
 - (4) 사람들이 물리는 시간과 전화 걸어야 하는 시간이 겹친다 >> 회의 당시에는

서로 도와주는 방향이었음

- (5) 못 탄 사람이 있더라도 35 분 쯤에 바로 출발할 것
- (6) 버스 배치가 직전에 항상 바뀌는 문제

지금 논의해야 할 사항은 1), 5-4)

- 미팅 당시 버스 자리표를 확실하게 !!!! 정하는것이 중요해 보임
- 업체 변경 관련 이슈
- 계약서 확실하게 작성 (늦었을지 등등.. 추석이 토요일화라 목요일/금요일 출발시켜야할지 등등 TF 에서 정해야할 이슈)
- 여름 LT 때는 버스를 언제 출발시켜야할지가 문제
- 실무 인원을 늘리는게 좋을 듯

[보고안건 #3] 문화국

■ 2023 롱패딩 공동구매

작성자 : 신호우

1. 사업 진행 과정

1. 업체 선정

기간 : 여름학기중

업체 : 비커션

3. 롱패딩 신청 및 제작

주문 기간 : 2023.11.06~2023.11.15

제작 기간 : 최대 3주 소요 (라고 공지했지만, 실제 수령 기간은 차이가 컸음)

샘플 착용 기간 : 2023.11.07~2023.11.08

4. 롱패딩 배포

배포 방법 : 직접 택배 발송

배송 기간 : 비커션 측에서 신청품을 직접 받은 후 제작완료되는 순서대로 순차
배송을 진행

2. 사업 결과 및 정산

- 1) 총 351 여벌 판매
 - (1) 22 년도 370, 21 년도 277 벌에 비해 증가한 추세

3. 설문조사 결과 및 학우 피드백

- 1) 설문조사 결과
 - 만족한다 2, 보통 1, 매우 불만족 1
 - 롱패딩 배송 날짜가 학생별로 매우 상이하고, 일부 너무 늦게 롱패딩을 수령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 2) 학우 피드백
 - 종강때까지 수령하지 못했다, 접수 확인 문자가 오지 않아 제대로 신청한건지 불안하다 등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 반면 롱패딩의 디자인, 퀄리티 등의 요소에서 부정적인 반응은 거의 없었습니다.

4. 논의 사항

- 1) 접수 지연이나, 제작 기간 초과 등의 문제의 해결
 - 비커션 측에 이유 등을 문의하고, 이에 추후 대비책을 마련
 - 구매 기간 1~3 주 앞당김
- 2) 업체 변경
 - 이번에 전체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학우들이 많았음
 - 하지만 업체를 변경한다고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리란 보장은 없음
- 3) 롱패딩 말고도 후리스 등의 다른 의류의 공동 구매
- 4) 인스타 DM 응대 방식의 매뉴얼화

형준 : 업체측에 주문 현황 목록을 만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지민 : 못해준다 그랬다, (배송 나갔는지 안나갔는지는 말해줄 수 있는데 배송이 느리다.)

홍윤 : 대부분의 의류 제작 업체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언제언제 나오고는 잘 안해주고, 이런거는

전체적으로 물량 좀 많고 배송 빠르는데 고르는거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주문 전체리스트를 쪽 받아서 주문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는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홍윤 : 야잠까지는 비커션을 사용해야할 것 같고, 업체를 바꾼다면 톱패딩부터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준태 : 계약서를 확실하게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홍윤 : 학생 <- 학복위 -> 비커션 구조이기 때문에 학복위가 중개하는 입장에서 계약서를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인 : 담당자에게 시켜서 야잠부터 바꾸든지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 클레임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담당자를 시켜서 바꾸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민 : 다른학교가 어떤 업체에서 시키는지 알아보는것도 좋을듯

해원 : 야잠 사업하기 전까지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대응 메뉴얼을 정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형준 : DM이 오면 "비커션측에 문의해보세요 ~~"라고 전달하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뉴얼을 만들고 메뉴얼대로 DM을 받으면 학복위에서 비커션에 연락하는게 좋을 것 같다.

지민 : 우리가 연락을 해도 비커션이 연락을 안봐요.

홍윤 : 이번 야잠부터 여러 업체랑 컨택을 해볼텐데, 바꿀 수 있으면 바로 바꿀건데, 현실적으로 비커션측에 제공을 했던 도안같은 것들을 새로 구해야할 수도 있고(업체마다 받는 양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안 수정을 해야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업체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야잠까지는 비커션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DM이 오면 비슷비슷하게 답변을 하곤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이 정해져있어서 그랬습니다. 인스타 바로바로 보는사람들이 복붙해서 불허넣을 수 있게끔 메뉴얼을 만들어보겠습니다.

=> TF안에서 업체 선정 등등 잘 부탁드립니다~

■ 2023 온라인캘린더

1. 사업 개요

- 1) 사업 방식 구글 캘린더의 일정 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카이스트 일정들을 한곳에 모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캘린더를 제작 후 링크를 통해 배포한다.
- 2) 사업 준비 기간 2023.08.04 ~ 2023.08.28
- 3) 사업 일시 하반기(상시)
- 4) 사업 결산 ₩0
- 5) 담당부서/담당자 문화국/김서진

2. 사업 내용

1) 사업 진행 경과

날짜	내용	비고
2023.08.04~2023.08.27	캘린더 일정 업데이트	2023년 가을학기 일정 업데이트
2023.08.28	인스타그램을 통한 캘린더 홍보 및 배포	
2023.12.29	캘린더 일정 업데이트	2024년 봄학기 일정 업데이트

2) 세부 사업 내용

학사일정을 비롯한 교내 기숙사 및 국가장학금 신청 날짜와 같은 학부생들에게 필수적인 일정들을 정리하여 학생복지위원회 구글 캘린더에 추가하고 링크를 통해 배포한다. 배포와 동시에 SNS를 통해 홍보를 진행한다.

3) 사업 참여도

학생복지위원회 인스타 프로필 링크에 온라인 캘린더를 공유해 모든 카이스트 학부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공유 캘린더 특성상 정확한 참여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3. 사업 결산

사업 결산 항목 없음.

4. 사업 평가

1) 사업 성과

학부생들에게 학교 일정을 정리한 온라인 캘린더를 배포하였고 정확한 참여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았음을 예상한다.

2) 미달 목표

캘린더에 누군가의 개인 일정이 공유되는 문제가 있다.

3) 제언

앞서 언급한 참여자 수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일정이 공유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준태 :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서진 : 원인을 몰라요 ㅜㅜ

주혁 : 아이디 비번바꾸는걸로 해결 되나요?

[보고안건 #4] 홈페이지

■ 홈페이지

작성자 : 김준태

1. 사업 진행 과정

- 1) 홈페이지 서버 관리
- 2) 보안팀 요청으로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 삭제 및 로그인 방식 변경

2. 사업 결과 및 정산

- 1)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한 진행이 가능한 사업
 - 북마켓
 - 온라인 캘린더
 - 대여 사업
 - 설문조사
- 2) 기능 추가 예정 사업
 - 딸기 파티
 - (1) 딸기 및 판매품목 예약(수량 날짜, 수량, 입금 안내)
 - 추석 귀향 버스
 - (1) 온라인 티켓 예약 및 입금 확인, 취소 요청
 - (2) 당일 배차 및 노선 정보 확인 페이지

현재 홈페이지 TF 재구성 후 개발 및 회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3. 설문조사 결과 및 학우 피드백

- 1) 설문조사 결과
 - 홈페이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 2) 학우 피드백

4. 논의 사항

- 1) 딸기파티 예약, 추석귀향버스 예약에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따로 구축할 계획임. (지금 사용하는 웹사이트 말고), 이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 2) 코인노래방 부활 시 위로금 부활 가능성 여부
 지인 : 코노 부활이랑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로금은 총학에 소부쳐야하는 부분.

[보고안건 #5] 코인노래방

■ 코인노래방 재개장

작성자 : 김우혁

1. 사업 진행 과정

본래 진행하던 상시사업 (코인노래방 청소 및 관리) 은 COVID-19로 인한 코인노래방 운영 중단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재개장 준비를 계속해 왔으나, 협동 조합 설립이 늦어지면서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2. 사업 결과 및 정산

- 1) 협동조합 설립 진행 상황
 - (1) 홍보 자료가 제작되고, 메일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송부됨
 - (2)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300 명으로부터 3 천만원의 금액이 모여야 한다고 함.
 - (3) 그러나 12/5 업데이트 기준으로, 229 명으로부터 약 천만원 가량이 모임
 - (4) 돈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 2)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 (1) 카드 결제기가 설치된 뒤 재개장할 계획
 - (2) 카드 결제 금액은 협동조합 통장으로 연결
 - (3) 코노 운영권을 반드시 인정받아서, 코노 수익금을 학복위 통장으로 받아와야 함
 - (4) 정산 받은 코노 수익금으로 내부 회계를 통해 근로비 지급 예정

3. 설문조사 결과 및 학우 피드백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설문조사 및 학우 피드백을 진행하지 않음.

4. 논의 사항

- 1) 코인 노래방 근로

(1) 내부 회계를 통해 근로비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보고안건 #6] 카이네컷

작성자: 박주혁

1. 사업 진행 과정

- a. '포토블링' 이라는 업체 연락 완료
 - i. 대여가격: 5 일 160 만원
 - ii. 운송 설치비: 10 만원 이하
 - iii. 기기 고장: 상주 직원 없음, 고장날 시 원격지원 가능
 - iv. 디자인: 6 개 이하로 가능
 - 1. 프레임 자체 제작시 개당 5 만원
 - 2. 보통 행사 프레임을 사용하면 단색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체 제작 프레임과 단색 프레임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비추천
 - v. 설치 장소: 실내 / 실외 둘 다 가능 (비오면?)
 - vi. 사진 촬영 금액 설정 여부
 - 1. 무료
 - 2. 유료: 금액 자체 선정 가능
 - a. 현금 결제 시 수익 100% 수령
 - b. 카드 결제 시 수수료 21% 발생 => 사업자 명의가 없기때문에 명의 위탁 수수료, 세금 등등으로 발생

2. 사업 결과 및 결산

- a. 사업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3. 설문조사 결과 및 학우 피드백

- a. 설문조사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4. 논의 사항

a. 사업 진행 가능 여부

초기비용 170만원 정도, 수익 정산 시 뽀뽀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학복위원들이 지원을 해준다면?

b. 제작 프레임 개수

종이는 처음에 700장을 준다고 하네요. 한장당 2천원으로 했을때 800장이 손익분기점.

1400장 => 20만원

우혁 : 데이터가 없으니 안전하게 하고 다음 사업때부터 대충 언제쯤 어느정도 사람들이 오더라가 생기면 조금 더 늘리는게 좋을듯요.

지인 : 찍다가 떨어지면 추가주문이 안되나요?

주혁 : 물어보겠다.

프레임 하나당 5만원, 2개한다고 생각한다. 단색1 이벤트1 해서 2개 하면 될듯

c. 설치 장소

주혁 :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한들 실내에 있으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탁 트인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 비가오면 기계고장날 수도 있나요?

주혁 : 천막치고하는거 OK

우혁 : 딸파 날짜를 정해두고 하는데, 비가 와서 망했던적은 없나요?

주혁 : 외부로 할 경우 스킴-운동장 사이. 릴이 닿을 수 있나?

재현 : 딸기파는 천막 옆에다가 내려가는 길목?

실외로 결정 땡땡

d. 인원 배치 여부 & 운영 시간

줄정리라던가, 고장 확인이라던가 등등 ...

우혁 : 연락처 정도만 붙혀두기

지인 : 학복위 DM도 하나의 방법

형준 : 오전 11시부터 ~ 저녁 7시까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24시간으로 업체랑 얘기도좀 해봐야하고, 10시반쯤에 한명씩 가서 확인도 해

보야할 것 같습니다. 천막 설치도 준비해보야할 것 같습니다.

e. 딸기 파티 이외의 행사에 진행여부

딸파때 보고 ㅇㅇ.. 학복위 행사에만 잘 적용을 시키고 캠프나 이런거는 부스 운영 정도의 차원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안건	2023년도 봄학기 사업계획
------	-----------------

[계획서 #1] 사무국

■ 2023 봄학기 대여사업

작성자 : 김정빈, 박주혁

1. 사업 진행 과정

- 1) 가을학기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
 - (1) 홈페이지 사전 예약
 - (2) 상근 시간 내 대여 및 반납
- 2) 대여 물품 리스트

품목	대여료	연체료	개수
버너	1000	3000	5
불판	1000	3000	2
프라이팬	1000	3000	3
코펠	1000	3000	2
집게	0	1000	10
가위	0	1000	5

아이스박스	1000	3000	소1, 대1
돛자리	1000	3000	23(특대) + 9(대)
천막	5000	10000	6
휴대용 앰프	5000	10000	1
마이크(유,무선)	1000	3000	1,1
릴	1000	3000	2
삼각대(대)	1000	3000	4
삼각대(소)	0	3000	1
이젤	0	3000	4
빔프로젝터	3000	5000	1

2. 사업 진행 예정일

1) 2024 봄학기 상근 시작일 (2024.3.)

3. 논의 사항 및 변동 사항

준태 : 홈페이지 다들 쓸줄 아시나요? 로그인 할줄아시나요? 로그인이란 홈페이지 대어 관련해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혁 : 제가 하겠습니다.

서진 : 한 말을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민 : 가격을 올릴 생각은 없나요 ?

주혁 : 대여사업 TF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빈 : 대여사업에서 버는 돈이 거의 0이라 올리거나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0원을 올리는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4 봄학기 택배사업

작성자 : 김정빈, 김재현

1. 사업 진행 과정

-박스 판매

판매 장소 : 사랑관, 미르/나래관, 희망/다솜관, 세종관 (문지관은 미진행 예정)

판매 수량 : 약 1,100여 장

-택배 수거

수거 장소 : 북측 기숙사, 미르/나래관, 희망/다솜관, 세종관 (문지관 상동)

-2024 봄학기 중간고사 이후 생활팀에 문의하여 공식 퇴사기간 확인

-사업 진행 1~2달 전 롯데 글로벌로지스 측에 퇴사 기간을 알려주고 이후 미팅에서 세부 계획 확정

2. 사업 진행 예정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8	29	30	5월 1일 노동절	2	3	4
5	6 어린이날 쉬는 날 어린이날	7	8 어버이날	9	10 ♣ 생일 축하합니다!	11
12	13	14	15 부처님오신날 스승의날	16	17	18
19	20	21	22 포스터 제작 및 주문	23	24	25
26 포스터 제작 및 주문	27	28	29 포스터 부착	30	31	6월 1일

일 26	월 27	화 28	수 29	목 30	금 31	토 6월 1일
포스터 제작 및 주문			포스터 부착			
포스터 부착				현충일		
			박스 판매			박스 수거
	박스 수거					
23	24	25	26	27	28	29
30	7월 1일	2	3	4	5	6

- 기말고사 기간에 맞추어 퇴사가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기타 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기될 수 있다.

1) 포스터 제작 및 주문

~5/28(화)

2) 포스터, 대자보 부착

~6/4(화)

4) 박스 판매

6/12(수), 6/13(목), 6/14(금)

5) 택배 수거

6/14(금), 6/15(토), 6/17(월), 6/18(화)

(혼선 방지를 위해 학생들에게 화요일은 공지하지 않음)

3. 논의 사항 및 변동 사항

천막좀 잘 안고장나게 메뉴얼을 잘 만들어서 택배측에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4 봄학기 설문조사 사업

작성자 : 김준태

1. 사업 개요

- 1) 사업 방식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상시 진행
- 2) 사업 준비 기간 상·하반기(상시)
- 3) 사업 일시 상·하반기(상시)
- 4) 사업 예산 ₩0
- 5) 담당부서/담당자 부위원장/김준태

2. 사업 추진 목적

학생복지위원회는 KAIST 학우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학우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학생복지위원회의 노력 이외에도 사업의 수혜자인 KAIST 학우들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에 설문조사 사업을 통해 각 사업의 준비와 진행에 대해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우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우들이 더욱 필요로 하는 복지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3. 사업 계획

1) 사업 수혜 대상자

학생복지위원회 사업을 이용하고 피드백을 전달하여 학생복지위원회 사업 개선에 기여하는 KAIST 학우들

2) 세부 사업 내용

본 학기 사업은 학생복지위원회 사업별 상시 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설문조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사업마다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기를 기점으로 감소한 학우들의 설문조사 참여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사업이다. 이러한 통합 설문조사는 2023년도 봄학기 사업별 설문조사 시범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되었으며, 학생복지위원회 홈페이지(welfare.kaist.ac.kr/survey)를 통해 상시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집계하여 학우들이 학생복지위원회 사업을 이용한 후 느낀 부분과 피드백을 수렴하고, 현행 사업 개선과 새로운 사업 계획에 참고하고자 한다.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4.02.05~2024.02.26	학생복지위원회 사업별 통합 설문조사 구글폼 작성	2022 봄학기 진행 후 2022 가을학기 진행 설문조사 사업부터 통합 설문조사 진행
2024.02.26~2024.08.16	사업별 통합 상시 설문조사 진행	
2024.08.16~2024.08.23	설문조사 전체 결과 분석	

해원 : 상품 말고 홍보로 통치나요?

지인 : 설문조사 아메리카노 10잔 정도는 괜찮을지도

서진 : 설문조사 배너를 만들자. (홍보이벤트 배너를 만들자)

[계획서 #2] 복지국

■ 2024 봄학기 북마켓

작성자 : 김하민

1. 사업 진행 과정

2024년 3월							오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1	12	13	14	15	16	17	
설날 연휴	설날 연휴(대체 휴일)						
18	19	20	21	22	23	24	
홍보 포스터 부착 및 카드뉴스 공지							
25	26	27	28	29			
	위탁 기간		북마켓				
					1	2	
					삼일절		
3	4	5	6	7	8	9	
미판매 책 회수 및 판매 대금 전달							
10	11	12	13	14	15	16	

- 1) 홍보 포스터와 카드뉴스 제작 및 주문을 2월 19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
- 2) 2월 26일~27일에 책 위탁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 이틀간 판매할 예정이다.
- 3) 북마켓이 끝난 다음 주부터 2주간 미판매 책 및 대금을 회수하는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 4) 사전에 북마켓 올림홀 예약이 필요하다. (2/28, 2/29 16:00~19:00)
- 5) 작년과 달리 상시 북마켓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학기가 끝날때 위탁도 받지 않을 예정이다.

2. 사업 진행 예정일

- (1) 홍보 포스터 부착 및 카드뉴스 공지 : 2/19 ~ 2/23

- (2) 위탁 : 2 월 26 일(월), 2 월 27 일(화) 19:00~21:00
- (3) 북마켓: 2 월 28 일(수), 2 월 29 일(목) 16:30~19:00
(16:30~18:00 / 18:00~19:00)
- (4) 책 및 대금 회수 기간: 3/4 ~ 3/8, 3/11 ~ 3/15

3. 논의 사항 및 변동 사항

- 1) 사업 진행 예정일이 적당한가? (ex. 삼일절 전에 위탁과 판매를 모두 끝내는 것 등)
- 2) 저조한 참여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ex. 이벤트 만들기 / 북마켓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 주기, 책 구경하러 온 사람들 대상으로 뽑기 진행)
- 3) 북마켓 홍보 방법 (ex. 인스타그램 이벤트 / 잘 모르는 새내기들에게도 홍보하기 등)
- 4) 오래 쌓여 있는 책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가격을 대폭 낮추고 빨리 팔아버려도 되는지

지민 : 안팔리는 책의 가격을 크게 낮춰 빠르게 처리하는 방향 생각중, 책을 구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하는 방향도 생각중입니다.

정빈 :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서 작성할때 금액할때 상품명을 작성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구, 대금 회수 기간이 3월 4월부터 시작인데 회계 감사기간이랑 겹쳐서 3월 7일정도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민 : OK

해원 : 저번에 북마켓 실무할때 목록에 있다고 해서 찾아보니 막상 없는 책인경우도 있었는데, 책 고를때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혼란이 없도록 할수있어야 할 것 같다.

지민 : 잘 팔릴 것 같은 책들이 있는데, 비싸서 안사는 것 같은데, 가격을 아예 천원 이천원으로 낮춰서 파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태 : 아예 천원, 이천원으로 낮출때에는 나눔을 하는게 어떨까요? (북 나눔)

■ 2024 딸기파티

작성자 : 곽헌

1. 사업 진행 과정

1) 딸기 및 김밥 업체 선정

(1) 딸기 업체

-작년의 딸기 품질이 괜찮았기 때문에 올해도 농협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의 딸기의 배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2) 김밥 업체

-작년 탐방 결과 1985 김밥집이 채택되었고, 이번년도에도 확정은 아니지만 개강 직후에 1985 김밥집에 연락을 할 예정이다.

-만약 1985 김밥집에서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다면 김밥집 몇군데를 찾아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2) 판매, 예약, 결제 방식

(1) 품목

-예약으로는 김밥, 박스 딸기, 누텔라 370g을 판매한다. 휘핑크림도 예약 품목에 넣을지는 자세한 정보를 더 검색한 후에 결정한다.

-현장 판매로는 누텔라 370g, 팩딸기, 휘핑크림을 넣는다.

(2) 예약 방식

-홈페이지 TF에서 예약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3) 결제방식

-홈페이지 TF에서 결제 시스템 또한 구축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결제를 대면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예약 창에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 *결제는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수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3) 인생네컷 부스

- 논의 결과 딸기파티 기간 동안 인생네컷 부스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4) 홍보 방식

- (1) 인스타그램, 에타, 홍보 포스터, 학우 전체 대상 메일 등으로 홍보
- (2) 인스타그램 게시물 공유 이벤트 진행
- (3) 딸기 파티 참여 인증 이벤트 진행

5) 딸기파티 이벤트

(1) 홍보 이벤트

-작년에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스토리 공유 이벤트와 앨범 커버 스토리 공유 이벤트를 진행하여 모두 참여한 사람 중 선정해서 상품을 증정했다. 올해도 공지글 공유 이벤트+스토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2) 딸기파티 기간 중 이벤트

-TF 내에서 나온 이벤트 아이디어: 딸기 탕후루와 관련된 이벤트, 빨간색/초록색 드레스코드를 입으면 할인 이벤트 진행, 인생네컷 부스 스토리 공유 이벤트 진행, 뽑기 이벤트 등

6) 현장 실무 일정

(1) 현장 실무

-1타임: 10시 40분 ~ 12시 30분

-2타임: 12시 30분 ~ 14시

(2) 배치 인원

-1타임: 최소 8명

-2타임: 5~6명

(3) 장소

장영신 학생회관 2층 오픈스페이스



7) 구체적인 실무 개선점

-줄의 길이 단축과 효율적인 실무를 위해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과는 다르게 1타임의 수를 8명으로 증가시킨다.

-예약을 한 사람들을 위한 현장판매 부스를 만든다. 노트북 2대로 진행한다.

-가격표와 계좌번호를 더욱 크게 공지하여 미리 살 품목을 정하게 한다.

-딸기 늦지 않도록 하고, 비닐봉지는 미리 사 놓는다. 기존과는 다르게 엑셀로 명단 확인하고 현장 판매 몇 개 나갔는지 체크한다.

2. 사업 진행 예정일

1) 사업 진행 날짜(예정)

(1) 홍보 기간 : 2023.03.14(목) ~ 2023.03.22(금)

(2) SNS 이벤트 진행 기간 : 2023.03.23(토) ~ 2023.03.31(일)

(3) 딸기 판매 기간 : 2023.03.25(월) ~ 2023.03.31(일)

(4) 업체 컨택 : 2월 마지막주 -

(5) 딸기, 김밥 예약 마감일(만약 예약 판매로 진행된다면) : 2023.03.22(금)



3. 논의 사항 및 변동 사항

(1) 전체적인 컨셉

-전체 컨셉은 무엇으로 정할까? 작년에는 뉴진스의 하입보이가 컨셉이었다. 컨셉에 맞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필터를 제작하여 딸기파티를 즐기는 사진을 추가하여 나만의 앨범커버 제작 스토리 공유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2) 음료 판매 여부

-딸기음료를 팔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학복위측에서 냉장고나 보냉팩을 구매해야 한다. 딸기음료에는 딸기우유와 딸기라떼(우유+딸기시럽) 등이 있다. 딸기음료를 판매하는 것이 좋을까?

=> 안하는것도 가능

(3) 색다른 이벤트

-기존의 이벤트에 추가하여 딸기 탕후루와 관련된 이벤트, 빨간색/초록색 드레스코드를 입으면 할인과 같은 아이디어가 있으며, 인생네컷 부스가 열리게 된다면 인생네컷 부스 이벤트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복권 이벤트도 하나의 아이디어이다. 또 다른 아이디어들을 모으면 좋을 것 같다.

=> 해원 : 드레스코드가 재밌을 것 같다. / 소정의 간식을 같이 준다.

주혁 : 선착순으로 상품을 준다.

지민 : 딸기만 파는거보다는 여러가지 재밌는걸 함께 하려고 기획. 돈을 벌기 위한 음료차를 불러오자.

지인 : 상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4) 인생네컷 부스

인생네컷 부스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

(5) 돛자리 개수 증가

돛자리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가? (대여 TF와 상의)

주혁 : 총학에서 돛자리 사준거 있어서 지금 조금 넉넉한 상황입니다.

준태 : 상근때 안오고 이상한때 와서 이때 시간을 바꾼다던가 이런것도 생각해보면 좋을듯.

(6) 작은 딸기 예약구매와 현장구매

작은 딸기를 예약구매와 현장구매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모든 품목을 예약구매를 할 수 있다면 현장구매의 번거러움을 줄일 수 있다.

=> 우혁 : 예약 구매 후 현장구매로 넘어가서 작은 딸기 사고싶은 사람이 있었다. 그렇다면 줄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작은 딸기도 예약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 지민 : 일단 현장구매만 하는걸로 ㅎㅎ

(7) 이외의 불편했던 점

작년 딸기파티에서 불편했던 점이나 논의할 점

주혁 : 딸기 양이 가늠이 안된다.

지민 : 예시 사진을 놓자.

재현 : 실무할때 예약줄을 두줄로 만드는건 별로일까요? 현장판매에 비해 메리트가 별로 없는것같아요.

컨셉은 피드백톡에 올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방향 ㅎㅎ

- 1) 젠장 또 딸기파티야
- 2) 등등 ...

지금 논의할 사항: 2), 3), 6)

■ 2024 봄학기 코인 노래방

작성자 : 김우혁

1. 사업 진행 과정

1) 협동 조합 설립

- (1) 조건이 만족되어 협동 조합이 설립된 이후부터 계획했던 사업을 개시할 것
 - (a) 그 시점이 언제가 될 지는 미지수
 - (b)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봄학기까지는 기대를 안 하는 게 맞다.
- (2) 코인 노래방 운영권 인정
 - (a) 새 협동 조합으로부터 코인 노래방에 대한 학생복지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권을 인정받아야 함.
 - (b) 운영권을 인정받게 되면, 수익 정산 및 유입 경로(협동 조합이 학복위한테 수익을 정산해주는 형태)만 바뀌고 나머지 프로세스(관리 등)는 이전과 동일할 것. 결제 방식을 카드/현금 하이브리드로 가면 우리가 현금 정산을 해야 할 수도 있음.

2) 시설 정돈 및 준비 (청소, 소프트웨어, 카드 결제기)

- (1) 최근에 시설팀으로부터 리모델링 및 청소 작업을 받았음에도 몇 개월 사이에 다시 곰팡이가 슬어버림.
- (2) 개장 일정이 완전히 확정되면 다시 시설팀에 연락할 것.
- (3) 마찬가지로 개장 일정이 완전히 확정되면, 코노 기기 사장님께 연락드려서 최신 곡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것. 4년치 신곡이 밀려 있어서 돈이 좀 들 것으로 예상. 자세한 견적은 연락해 봐야 파악 가능.
- (4) 카드 결제기 설치하는 필수라고 생각함. 일정이 확정되면 코노 기기 사장님과 본격적으로 상의해 볼 예정.

3) 근로 제도

- (1) 내부 근로 vs 외부 근로
- (2) 기존에는 학복위 내부에서 코노 근로자를 따로 선발해서 최저시급을 지급해 관리했음.
- (3) 근로 업무에는 시설 청소, 수익 정산이 있었으나 이제는 수익 정산이 우리 일이 아니라 시설 청소 정도만 포함될 것으로 예상.

2. 사업 진행 예정일

미정..

3. 논의 사항 및 변동 사항

1) 협동 조합이 학복위의 코인 노래방 운영에 회의적일 경우

- (1) 최대한 설득해 볼 것
- (2) 정 안 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깔끔하게 사업 종료 or 장기적으로 운영 권한 회수 계획을 염두에 둔 인수인계?)

정빈 : 우리쪽에서 운영권을 넘어올 수 있게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우혁 : 코노때문에 학교에서 오히려 예산을 안주고있기도 한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지인 : 항상 받는만큼 받았는데, 코노 안한다고 돈을 많이주지는 않을거예요. 근데 많이 회의적인가요?

우혁 : 내년 회의를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지인 : 아직 협동조합이 안만들어져서 총학에서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2) 결제 방식

- (1) 카드 only (손실금 관리 및 정산 관련 로드 zero)
- (2) 현금 only
- (3) 하이브리드

우혁 : 카드 결제기만 하고싶다.

준태 : 외국인 코노 오나? 카드 결제기 안비싼가요?

지인 : 코노 공기청정기도 돈내는중 ...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돈을 받는것도 괜찮

형준 : 카드 쓰면 수수료 안나오나요?

우혁 : 개장할때 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결제수단(외국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카드만 하는것도 괜찮을 듯. (결제되는 카드 종류 등등 만 알아보면 될듯 ..)

3) 외부 근로자를 선발할 필요가 있을까? => 저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4) 운영 시간

원래 어떻게 했는지?

17시 ~ 18시 : 청소 시간

18시 ~ ????: 운영 시간

=> 개장정해지면 한번 더 각잡고 제대로 한번 해보는걸로 !!!

=> 재개장하는데 얼마드는지? 우혁이가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네요.

5) 수익을 정산 받은 이후 내부 회계를 통해 근로비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음.

[계획서 #3] 문화국

■ 2024 야구잡바 공동구매 사업

작성자 : 신호우

1. 사업 진행 과정

1) 디자인 공모 : 작년 디자인 유지

2) 업체 선정

기간 : 겨울학기 중

업체 : 잠정적으로 비커션, 그러나 변화 가능성 존재

3) 홍보 방법

디자인국에서 디자인 하여 2월 말부터 포스터, 대자보, 현수막 게시

에브리타임 및 인스타그램 카드뉴스와 홍보글 게시

신입생 단체 실명/익명카톡방에 링크 게시

4) 샘플 착용 기간

개강 첫 주 상근시간에 학복위실 앞 복도에서 샘플 착용

5) 입금 및 배송

업체에서 일괄 진행하므로 별도의 실무 없음

6) 사이즈 설문조사

교양 중간고사 전 주(6주차)까지 구글폼을 통해 사이즈 설문조사 진행

2. 사업 진행 예정일

1) 업체 컨택 및 가격 책정 기간 : 2월 12일~16일

2) 홍보 기간 : 2월 17일 ~ 3월 2일

3) 학생 주문 기간 : 2월 20일 ~ 3월 2일

- 4) 샘플 착용 기간 : 2월 26일 ~ 3월 1일(학생 주문 기간 중 상근시간)
- 5) 업체 발송 기간 : 3월 3일 ~ 3월 30일 (제작 기간 최대 3주 소요)
- 6) 사이즈 설문조사 기간 : 3월 3일 ~ 4월 9일

3. 논의 사항 및 변동 사항

- 1) 2023년 야구잠바 공동구매 총 1031장 판매, 이전(20년 663벌/21년 441벌/22년 700여벌)과 비교하여 주문량 증가
 - 2) 대면 기간인 것을 고려하여 주문기간과 겹치는 상근시간에 샘플 착용 진행
- 문화국 TF 내부 + 국장 + 위원장단 통해서 업체변경 진행 상황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업체를 한번 알아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업체별로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포스터도 있어야할거고, 품 양식도 정해져야 하고 ...
 - 살짝 일정을 당기고, 포스터 일정도 한번 픽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2023 봄학기 온라인캘린더

작성자 : 김서진

1. 사업 진행 과정

- 1) 온라인 캘린더 제작
 - (1) 학복위 계정 구글 캘린더 일정 공유를 이용해 제작

 - (2) 포함 일정: 수강신청/변경 기간, 중간/기말고사, 축제, 국가장학금, 학복위 사업 등
- 2) 인스타 카드뉴스 홍보 및 배포
- 3) 작년과 동일하게 인스타 인증 이벤트 진행(경품 미정)

2. 사업 진행 예정일

- 1) 온라인 캘린더 배포 및 인스타 카드뉴스 제작&업로드 - 2월 26일
- 2) 인스타 인증 이벤트 - 2월 26일 ~ 3월 3일

3. 논의 사항 및 변동 사항

- 1) 현재 온라인 캘린더를 학복위 인스타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만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학복위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면서 다운 링크를 추가하면 어떨까함(현재 학복위 사이트 들어가보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온라인 캘린더가 없음, 작년 31대 겨울 회의에서도 나왔던 안건인데 실행 X)

준태 : 홈페이지 TF차원에서 홈페이지에 링크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 2) 캘린더캘린더에 누군가의 개인 일정이 공유되는 문제가 있는데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 3) 캘린더에 더 추가할 일정 및 피드백
서진 : LT 끝나고 학복위 일정 추가할 계획입니다.

■ 2024 봄학기 디자인 사업

작성자 : 조형준

1. 사업 진행 과정

1) 디자인 외주

(1) 작년의 경우 (비즈프린트) - 자체제작

1. 인쇄비용

(1) A3 스노우지 60 장 50,000 원

(2) A3 스노우지 100 장 90,000 원

(2) oopy 사이트 (<https://moodon.oopy.io/poster/d>)

1. 디자인 비용

(1) 165,000 원

5. 작업일 4-5 일 / 시안 1 종 / 수정 3 회

6. 가성비 좋은 비즈니스형 포스터 디자인

7. 유료 이미지 사용 / 원본데이터 미제공 / 인쇄비 별도

(2) 38,500 원

5. 작업일 2-4 일 / 시안 1 종 / 수정 3 회

6. 프리미엄 홍보용 전단지 디자인

7. 유료 이미지 사용 / 원본데이터 미제공 / 인쇄비 별도

2. 인쇄비용

(1) A3 포스터 전용지 10 매 60,000 원

(2) A3 포스터 전용지 30 매 110,000 원

(3) A3 포스터 전용지 50 매 165,000 원

(4) A3 포스터 전용지 100 매 324,000 원

(5) A3 아트지 150g(코팅별도) 100 매 55,000 원

(3) Kmong 사이트

(https://kmong.com/?utm_source=google_pc&utm_medium=cpc&utm_campaign=0&utm_content=market&utm_group=0&utm_term=%5B%ED%81%AC%EB%AA%BD%5D&gad_source=1&gclid=Cj0KCQiAh8OtBhCQARIsAikWb687hJ_jlqMAGbSfT5I6evCfx5ckAg7p7e1wTVjSnMck_oyazrSFRMYaApemEALw_wcB)

1. 디자인 비용

(1) 50,000~200,000 (인쇄 비용 제외인 곳도 있어서 추가 비용 존재 가능)

(2) 작업일은 평균 2~5 일

(3) 수정 횟수는 평균 2~4 회

(4) 단, 디자이너 모아놓은 사이트라 케바케가 될 수도 있음

2) 직접 디자인

(1) 작년 디자인물을 살짝 바꿔서 사용

1. 이현석 문화국장님의 자료를 받아야 함
- (2) 완전 새롭게 직접 디자인
 1. 디자인을 잘 하는 인물 필요
- 3) 디자인 필요 사업
 - (1) 야구잡바 공동구매
 1. 카드뉴스
 2. 포스터
 3. 야구잡바 디자인
 - (2) 봄, 가을 정기 북마켓
 1. 카드뉴스
 2. 포스터
 - (3) 신입 국원 모집
 1. 카드뉴스
 2. 포스터
 - (4) 봄, 가을 온라인 캘린더
 1. 카드뉴스
 - (5) 딸기파티
 1. 카드뉴스
 2. 포스터
 3. 인스타 필터
 - (6) 카이네컷
 1. 카드뉴스
 2. 프레임
 - (7) 봄, 가을 학기말 택배사업
 1. 카드뉴스
 2. 포스터
 - (8) 추석귀향버스
 1. 카드뉴스
 2. 포스터
 - (9) 롱패딩 공동구매
 1. 카드뉴스
 2. 포스터
 3. 롱패딩 디자인

우혁 : 카이네컷이랑 딸파랑 분리해서 카드뉴스를 만드는게 어떨까요? 유동량 많은 통로에 놓기때문에 따로 홍보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딸기파티 인스타 필터 홍보처럼 하나는 딸파 프레임, 하나는 카이스트 프레임으로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사업 진행 예정일

- 1) 포스터
 - (1) 각 사업 1 달 이전에 요청 부탁
 - (2) 2 주동안 디자인 및 피드백
 - (3) 사업 2 주 전 인쇄 요청
 - (4) 사업 1 주 전 포스터 부착

- 2) 카드뉴스
 - (1) 각 사업 1 달 이전에 요청 부탁
 - (2) 2 주동안 디자인 및 피드백
 - (3) 카드뉴스 게시

3. 논의 사항 및 변동 사항

- 1) 작년까지는 이현석 문화국장님이 직접 디자인했기에 올해는 외주를 맡길지, 학복위 내에서 디자인 할지 정해야 됨

- 2) 원래 디자인을 수정하고 필요한 것만 디자인 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디자인 하기로 결정

- 3) 학기 시작 전에 이현석 전 문화국장님께 디자인 파일 받을 예정

심의안건	학생복지위원회 제6차 회칙 개정안
-------------	---------------------------

위원장이 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얻은 발의로 학생복지위원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제6차 회칙 개정안을 공유하고 투표를 진행함

재적 17명 (학생복지위원회 위원 17명 중 현장 대면 참석 15명, 비대면 참석 2명)

제1조~ 제78조에 대하여

찬성 16명, 기권 1명(김우영)으로 학생복지위원회 6차 회칙 개정안이 통과됨